

제41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1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 보고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상정된 안건

- 업무 보고 3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출석하신 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황인수 제1조사국장의 금일 업무

보고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님, 황인수 제1조사국장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먼저 지난 6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송구함을 표현합니다.

현재 제1국장의 신분은 본인이 다른 국가기관에 20여 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은 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출석을 시키면 지난 6월 19일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되어서 일단 불출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은 이후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난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는 잘 아시다시피 어두운 역사 그리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업무라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는 제1조사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 있어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공개적인,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출석을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갖춰야 될 그런 자격과 적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김광동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오후 2시 회의까지 조사1국장이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위원장님,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참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본인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만 협조를,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 그런 범위 내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신정훈 그런 자세야말로 대단히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부위원이라면 그리고 정부 산하의 각 위원회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채용 절차, 근본적인 과정에서부터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는 피해자 가족들을 대신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그 조사 1국장에 대해서 물을 권리가 있고 또 조사 1국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후 2시까지 이 회의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요청하고 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광동 위원장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뭐 출석은 하도록……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옥남 상임위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상임위원 여전히, 어제까지는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병가 이유로 지금 회의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업무보고는 국회가 유가족을 대신해서 진화위의 진실규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대표로 출석했지만 실제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옥남 상임위원의 답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역시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 역시 시정해 주실 것을 조치 부탁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이옥남 위원은 지난 7월 4일 이후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 과정에서……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입었던 충격으로 현재 입원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퇴원하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런데 의사가 퇴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당분간 병원에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현재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불출석에 합당한 사유가 될 만한 타당한 자료들 또 진료기록 이것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서 그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 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0시11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기관 전체 순으로 기관장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별 상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안전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한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또한 정부 의전과 기록 관리, 정부 혁신 및 조직 운영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유지된 지방행정체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지역 공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기반도 넓히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과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이터와 AI 기반의 위험징후 조기 파악 시스템을 도입하고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강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위험사면, 지하차도, 하천 등 풍수해 취약 분야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재난 유형을 구체화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재난양상 변화에 따른 범정부적 관리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 여름철 생활밀착형 안전 대책 추진 등으로 국민의 일상 속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던 행정전산망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근본적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등을 통해서 국민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공무원 보호와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서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원팀 정부를 구현하고 공공부문에서 AI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서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골목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해서 함께 잘사는 대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는 민생 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가능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극복입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은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인 저희 행정안전부가 민생 안정,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 국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차관보입니다.

김광용 대변인입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입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입니다.

김정기 조직국장입니다.

박현수 경찰국장입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입니다.

양의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입니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직무대행입니다.

김장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직무대행입니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안전위원회로 보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사무 등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관리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법규 운용으로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법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고 선거·정치 제도 연구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장선거,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 지원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거행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 과정을 면밀히 진단·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향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게 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린 자세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국회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아낌 없는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철훈 사무차장입니다.

임정수 감사관입니다.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광호 선거정책실장입니다.

김인수 기획국장입니다.

김수연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윤재수 선거1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

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 독립 운동 사건, 한국 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6일로 예정된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2024년 7월 현재 2만 245건의 진실 규명신청 사건 중 진실규명 결정 6859건 등을 포함해서 1만 2809건(63.3%)을 종결 처리하였고, 남은 7436건을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없던 형제복지원과 납북귀환어부 및 선감학원 등 사건에 대한 권고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기도 등이 피해자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록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졌고 참고인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비해 조사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오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남아 있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0년, 100년 지난 사건들을 대하는 것이 매우 버겁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화해와 통합된 미래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지난하고 승고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겨는 기대와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상임위원장입니다.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김민형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득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사)

거듭해서 조사1국장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순서입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님은 지난 7월 8일 임명되고 첫 위원회 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맞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기용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명을 축하드리고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에 출범한 이래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무원,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 전문성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각 부처가 적재적소 적시의 유연한 인사 운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인사 혁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험생의 취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정부 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를 현실화한 데 이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정부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의 기본적 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선도하여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입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박용수 차장직무대리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천지윤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입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입니다.

다음으로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장 윤희근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청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치안환경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각종 사기 범죄는 진화를 거듭해 서민의 일상을 과괴하고 마약, 도박 등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 범죄는 어느새 청소년층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상시화된 재해·재난 역시 많은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위협 앞에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신설된 범죄예방 대응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정책 전반을 새롭게 가다듬고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가용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겠습니다.

신종 악성 사기와 마약, 도박 역시 범죄의 근원까지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아동학대, 스토킹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주는 필수적인 기반이자 든든한 방패입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평온한 일상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고 사회 곳곳에 잔존한 부조리와 부패를 일소해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업무 전반에 폭넓게 접목시키고 교육·훈련 체계도 지속 혁신해 현장 경찰의 대응력과 치안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법 집행을 위해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치안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을 둘러싼 여건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찰 활동의 지향점은 오직 국민입니다.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복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확충과 제도적 지원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찰 활동을 펼치기 위해 쇄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창선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배대희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찬 수사국장입니다.

김갑식 형사국장입니다.

이승협 안보수사국장입니다.

김철문 경상북도경찰청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입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직무대리입니다.

조순환 경찰공제회 이사장직무대리입니다.

하상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으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일 경기 화성공장 화재 관련 현안보고 때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와 조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개 부처와 경기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대책 마련이 논의 중이며 소방청 관련 소관 법령과 제도, 기준을꼼꼼하게 살펴 신속 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국 6만 7000여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불변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동안 재난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 삼아 다져 온 신속·최고·최대 대응시스템을 더 견고히 하고 제복의 당당함과 전문성으로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난은 신고 단계부터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소방 대응단계를 최고 수위로, 활용 소방력은 최대로 동원하여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안정시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19 구급 서비스는 대원 역량을 키워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대상물 특성에 맞게 화재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위험도가 높은 대상은 소방점검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전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책임성을 더 높이고 관계자의 교육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장비 도입과 소방산업 발전을 통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와 시스템을 확충하여 대원의 안전도를 높이고 K-소방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당당하고 신뢰받는 소방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소방관의 심신 건강관리와 국립소방병원과 수련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심리 안정을 돋겠습니다.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든든한 후원자임을 굳게 믿고 소방정책과 당면 현안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입법 사항은 소통하며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소방청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청 간부입니다.

배덕곤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입니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입니다.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입니다.

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입니다.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입니다.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간사님들 간의 합의로 아까 소개했지만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먼저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경찰청장님 그리고 경북청장님, 제가 수사심의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 안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름하고 뭐 변호사, 교수 이렇게 왔는데……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게 명단 아니거든요.

제가 왜 명단을 요구했겠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채 상병 관련 불송치 주요 근거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경찰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면면을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3분 이내로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제대로 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꼭 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신정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다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수심위의 가장 운영의 핵심이랄까 이것이 사실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명단이라든지 그분들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결정만 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심위가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박정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이제 행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국무위원들이 출석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다 나오고 산하기관장들도 다 나와서 앞으로 이제 행안위를 열심

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행안위원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아야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안위원회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첩과 국방부 검찰단의 이첩서류 회수와 관련해서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요. 경찰청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이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만일 수사 대상이라면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접수한 기관의 문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 자료 요구 견을 무시하는 경찰청을 경고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답변은 뭐 여러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것의 공정성의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이고 공개성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수사심의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준영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4월에 처음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서 외부심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발족했다고 돼 있는데 방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경찰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때 21년 4월에 만들었을 당시에 만들어진 그 취지라든지 관련된 예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받고 싶은데요.

○**위원장 신정훈** 방금 말씀하신 예규가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예규가 있으면 그것을 제가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알겠습니다.

이거 공개돼 있는 자료인데 제출해 주실 수……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가 수심위 운영과 관련된 예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예규 자체는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배준영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양부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이번에 해병대 수사심의위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번 열렸는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제가 알기로 풀(pool)제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이 풀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경찰이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스스로 인지수사를 해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강제수사, 압수수색영장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갔으나 불송치된 사건의 건수를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자료 요구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에 경북경찰청장님께서, 이용민 중령 측이 청장님을 고발하셨는데요. 청장님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권한이 없다는 게 이용민 중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제인 정부 때 2021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용민 중령 측이 공수처에 청장님을 고발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했는지 저는 궁금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조에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동안 경찰청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개최한 사건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었는지, 어떤 것인지를 자료를 본 의원실에 오늘 오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식 위원님께서 명단을 요청했는데요. 청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 없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명단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분명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장 신정훈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리고 그 규칙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지만 규칙에도 보면 그런 명단이라든지 수심위의 내용을……

○위원장 신정훈 그 규칙 보셨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규칙 몇 조 몇 항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조항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보면 12조 4항의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조항에도 지금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 이 이야기 없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심위는 그야말로 공정·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 건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심위를……

○위원장 신정훈 자, 그 이야기는 지금 경찰청장의 운영상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운영은 이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제가 다 살펴봐도 없어요.

두 번째로요 지금 지방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풀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소위 말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위원들이 제척되거나 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운영될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잖아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위원장님께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 저희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법원 판례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 이런 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경찰청장 계속 타 위원회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규칙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구성이 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된 적 있어요, 없어요? 공개됐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된 적 있어요, 없어요? 공개되어 운영되어 왔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수심위라는 것은 저희 본청, 경찰청에도 있고 각 시도청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본청의 수심위는 대부분이 정책과 관련한……

○위원장 신정훈 잠깐 중단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청과 지방청의 수심위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방청은 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지금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시행할 당시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돼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일어나셨으면.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청장이 보고드린 대로 수심위가 국수본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청에 있는데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수본의 그 명단이 공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내용이에요.

2021년도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보학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위원장은 서보학 교수님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외부 위원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행정을, 원칙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이 원칙에, 이 규정에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어디에도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내용 살펴보시고 이상식 위원님이 제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일단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21년 4월에 공개된 과정은 그때 아마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그분들을 위촉하는 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일부 그 명단이 공개된 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원칙이 그렇다면 그런 공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니까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아마 위촉한 그 사실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찬가지로 박정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이첩 공문이라든가 반환 요구 공문이 접수되는 그 순간부터 그 해당 기관의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타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라 해 가지고 그것의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업무에 대한 비밀주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조은희 위원님 그리고 배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3분 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매우 중요한 명단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에도 공개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창구 지역구 김종양 위원입니다.

몇 세기가 되어야 한 번 올 수 있는 첫 질의자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너무 예열이 과잉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기관 업무보고하는 날이라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하려 하였는데 아쉽지만 경찰 현안 이슈에 대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 채 상병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최근 기록적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 피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신임 경찰 교육의 산실인 중앙경찰학교 정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경찰을 믿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도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며칠 전에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고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1년여에 걸쳐 수사한 그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관련 핵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위 외압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느냐 등입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님,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화나 청탁 등을 받았거나 본인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외부로부터 전화나 직접적인……

○**위원장 신정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다면 경북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그간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의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받았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과 함께 실황조사도 한 적이 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방재 자문단한테 내성천의 위험성, 보행자 위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종양 위원** 말씀을 종합하면 그간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북청의 수사 전문가 자원 그리고 또 소방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어떤 그런 자문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뜻인데 그게 맞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를 참고하였다고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위로 언제 설치된 조직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21년 4월에 설치가 됐고요. 설치는 그때 됐고 이번에 저희 자문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면 당초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가 설치가 되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경북경찰청장님,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부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제가 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신청권자들이 있고요.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피해자 등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경찰청장이나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건 관계인하고 지방경찰청장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도 안건 부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문제 삼아서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규정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을 하고 보자는 행위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얼마나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애쓰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장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원소속 부대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직권남용죄 등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양 위원** 저 화면……

1분만 더……

○**위원장 신정훈** 예, 1분.

○**김종양 위원**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현재 화면상 PPT 자료처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의 원소속 부대의 장이지만 순직한 채 상병은 당시 재난 피해 구조 활동에 지원 나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형사상 처벌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피해 구호 활동 당시에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언급하였던 것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 등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어느 정권이나 누구로부터의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서 모든 국민들은 경찰을 믿노라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진행상 한 가지만 좀 강구드리겠습니다.

본질의 7분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해 주신 김종양 위원님은 두 번째 질의에서 좀 차감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7분을 기준으로 해서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우선 1주기를 맞는 채 상병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격노를 하셨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는 못합니다.

7월 8일 순직 해병 사건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명을 송치하고 3명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불송치에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320일 만에 수사 발표를 했는데 수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는 일단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67명에 대해 수사를

했고 그 관련자들도 대부분이 보면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의 출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훈련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시일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압수물의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문단 자문 이런 과정을 듣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는. 320일씩이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그 과정 안에 임성근은 호주대사로 영전도 하고 별일이 다…… 아, 이종섭…… 죄송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영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이 수사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은?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지금 의견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찬반 여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찬반 여론이 어느 정도 비중인 것 같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북청에서는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려고 했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비공개는 아니고요, 백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게 설명할 부분들이 위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들이라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위성곤 위원** 그것들이 낱낱이 공개되어서 국민들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청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무언가 숨기려고, 사실은 제한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사진·영상 촬영, 녹음을 일절 금지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처음에 백브리핑으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답변석의 마이크를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석에서 전혀 답변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하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저희가 최초에는 백브리핑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관심사가 높아서 온브리핑하고 백브리핑을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실제 촬영과 녹음과 사진은 안 되게 하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의도로 읽혀요, 청장님.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게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성곤 위원**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사팀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에 대해서 수사팀 의견은 어땠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심의위 결과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로 나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불송치로 결정이 났는데 이 사건을 책임졌던 수사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동일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은 저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서 받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은 공개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회의하는 내용들은 다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표결을 했잖아요. 의견 분포는 어땠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견 분포는 어떻게 됐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의견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위성곤 위원** 찬반이 비등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이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일방적인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방적이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위성곤 위원** 국민들과 수사심의위원회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문해력 테스트의 오답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를 보시면 임성근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군사 교범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슨 수중 수색을 해라라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 작전지침의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던 것으로……

○**위성곤 위원** 원래 해병대는 육상을 수색하기로 했었지요? 이 지시로 인해서 실제로 수풀로 내려갔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작전 지역하고 작전 방법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소방하고의 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소방은 수중을 하고 해병은 수변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그 수변의 개념이 수중입니까, 수변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변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변의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변은, 사전적으로는 수중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변은 물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물 바깥쪽이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위성곤 위원** 결국은 이 지시가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인, 저는 구체적인 지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 수사팀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소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경찰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태도로 으레 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임성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경북청장님,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얼마 전 경북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변론요지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국민의 시각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늦은 시간,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면서 바둑판식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월권은 맞지만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슨 켜변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답변드릴까요?

○정춘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그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그 월권 때문에 한 청년이 수중 수색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순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한 사람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 하부 직원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 사단장이 나가서 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 행위가 그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수중 수색으로……

○정춘생 위원 그러면 그 의무 없는 의무를 이행을 한 부하 직원들은 처벌을 받고 지시를 한 사단장은 책임이 없고, 납득이 갑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행안부장관님, 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천군 주택가 산사태 현장입니다. 이처럼 수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장관님,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전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정춘생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그 지시 문건을 보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냈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겁니까? 국가기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 정부는 모든 게 다 기밀입니다.

담당 누구인지 일어나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마 자연재난실일 텐데요.

○정춘생 위원 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요, 오늘 자연재난실장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에라도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PT 넘겨 주세요.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입니다. 하나 마나 한 지시사항입니다. 폭염에는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할 것, 폭설에는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도 이렇게 지시사항 내려갈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일단 지금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정춘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출국하실 때도 출국 현장에서 저한테 각별히 당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만하신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장관 중심으로 가용자원 총동원하라는 말씀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수중사태라든가 침수사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 문재인 정부의 지시사항은 달랐습니다. 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을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위험 지역의 선제적 통제, 필요시 공공시설 등 안전한 장소에 사전 대피, 해상의 선박피해 방지 를 위한 대피 및 산업현장 강풍 사고 방지 철저, 소방관·경찰관 등 재난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 해안가·하천변 등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지시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재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해야 행정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가는 겁니다.

PT 넘겨 주세요.

이 16자 지시사항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이 난리 났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지시사항, 이번 월드컵 철저히 준비해 우승할 것. 비 오니까 장마 대비해라, 대통령 지시사항. 비 오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 아버지 지시사항. 얼마나 횡당했으면 이런 패러디 글이 넘쳐 나겠습니까?

지난 며칠간 수천 개 넘는 기사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무시·무능·무지의 표본, 우리나라는 2년 넘게 대통령 부재중, 무정부니까 국민들 너희들이 알아서 대비해라…… 이렇게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에서 질타가 이어지니까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소 읊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친 조국혁신당의 구호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1등 한 것 아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요. 그게 던지는 메시지가, 신호가 뭔지 명확히 정말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패러디 해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발신 : 대한민국 국민.

수신 : 윤석열 대통령.

제목 : 대한민국 국민 지시사항 통보.

1. 대한민국 국민의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하여 국민의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대한민국 국민 지시사항,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

이상입니다.

꽤 려디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라는 것은 계층이 있고 위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포괄적인 지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재난본부장인 제가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춘생 위원** 기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공문이 다 그 내용이에요, 16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공문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이후에 후속돼서 국무총리 그다음에 중대본부장의 지시가 차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민의 질타를 받으니까 추가로 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채 상병 사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채 상병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편지에 대해서 답신의 형식을 빌려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과를 내고 죄가 있으면 일별백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경찰청과 공수처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찬찬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 8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폭력 범죄 및 군인 등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서 일반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배준영 위원** 군 수사가 이렇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참 무겁게 다루고 정말 정밀하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훈 단장의 경우에 단 열흘 만의 조사 결과로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서는 1년여 가까운 심층조사를 통해서 9명의 혐의자를 조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수사를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으로서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배준영 위원** 저 PPT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유심히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휘계통도입니다. 이른바 작전통제권인데요.

경북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병 7여단장이 1600명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해병 1사단에서 파견이 됐지요. 그래서 11포병 대대장이 최선임 대대장으로 지휘를 했고 그리고 7포병 대대장이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부중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색조장이 있었고 그 밑에 채 상병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휘라인에 있었던 해병 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이분들은 모두 지휘라인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제가 이 보도자료도 보고 아까 민주당 한 위원님이 밀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백브리핑에 관련된 자료들, 기자분을 섭외해서 누구나 국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보니까 사실 박정훈 대령, 단장은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저도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이 수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라든지 뭘 하라라든지 지휘에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그것 관련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박정훈 단장이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 백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안전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장 중에 최선임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 담당이고 최선임이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 조사해서 한 거랑 1년 동안 제대로 조사한 거랑 다른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군사법원법 이 법안이 바뀐 이후로 통계를 보니까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이미 경찰을 통해 가지고 한 게 140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했겠지요.

그리고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왜 본인이 7월 15일 날 파견 보내고 작전통제권을 전환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군 50사단장이 계선상에 있습니다. 총책임자예요. 그러면 해병 1사단장이나 육군 50사단장이나 똑같은 사단장입니다. 그러면 육군 50사단장은 왜 기소 안 합니까? 제가 박정훈 단장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50사단장은 왜 기소 의견으로 송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자 백브리핑을 보니까 그렇게, 청장님의 답변하셨는지 누가 답변하

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예하부대인 1600명을 관장하는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는데 그것 그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1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1분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요. 군령과 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사단장은 군정의 차원에서 일을 챙겼는데 너무 이분이 과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처벌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따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어제께인가요, 오송 지하차도 현장 다녀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점검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주로 점검한 것은, 제가 두 번을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는 사고 현장하고 터널 안쪽까지 다 보고 왔었고요. 이번에 간 것은 주된 새로 설치된 부분, 그러니까 탈출 시설 그다음에 차단막 그다음에 침수 기준 이런 것이 잘 이행되는가를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판 부분이 한 단위당 300kg를 지탱한다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 충분할까 그리고 어린이가 매달리기는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사고 원인으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차량 진입 통제도 없었고 진입 차단 시설도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 됐다는 것, 이게 다 행안부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세 번째는 탈출을 위한 대피시설이 없었다는 점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은 금강환경관리청, 충북도, 청주시 또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인재다, 중대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고를 직접 가서 보셨어요.

다음 PPT 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차량 진입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 통제에 대비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으면 뭐를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오송으로 들어가는, 오송역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곳에 다, 오송역을 가려면 무조건 지하차도를 다 들어가야 합니다. 6곳의 들어가는 모든 입구에 다 지하차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면 만약에 어디가 통제가 된다 그러면 우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우회를 해야 하지요? 어디로 우회를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오송역까지 가는 나머지 지하차도는 점검을 미쳐 못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 진입차단시설 보고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밑에서 사진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6곳에 현재 되어 있고 431곳 중에서 285곳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 6곳에, 사고 났었던 곳 말고 차단시설 돼 있는 곳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 배수펌프 가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배수펌프는 사고 직후에는 가 봤고요, 이번에는 못 가 봤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번에 기자들이 전부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가셨다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자들이 가자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기자들 얘기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배수펌프가 현재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배수펌프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배수펌프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대로 조치됐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개가 더 늘어났는데요. 그곳에서 담당자들은 지하에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만 배출을 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면 왜 그것을 배수시설을 해 놨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둘 다 기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 점검 안 하셨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탈출을 위한 대피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곳이, 2개인데 이것 제가 먼저 가서 문제 제기했었지요. 그래서 아마 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2개로는 탈출할 수 없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광희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가 보시면 이것 2개 가지고 탈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 같은 곳인, 전주시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전주는 왼쪽처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직접 다녀오시고 두 번이나 가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지점에 다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작년에 사고가 났었던 눈높이에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돼야 하는 거지요. 다시 똑같은 사고가 나면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차량진입 통제와 관련된 우회도로도 또 진입차단시설도, 여섯 군데 들어가는 모든 입구에 대한 시설도, 배수펌프 작동 여부도 그리고 탈출을 위한 대피시설도 작년 같은 사고가 또다시 난다고 하면 전혀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사고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빠져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다 했는데요, 위원님하고 조금 방향이 달랐는데 저는 오송역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

○**이광희 위원** 오송 들어가는 입구, 오송역을 들어가는, 오송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인근의 읍내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다 이동을 지하터널을 들어가게 설계를 했어요, 그 도로가. 그게 다 위험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려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보완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 점검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

소방청장님,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리셀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 TF를 운영을 하면서 염화티오닐 때문에 또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아리셀 현장 투입된 소방관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흡기 통증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언론에서 그 관계가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게끔 했고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청장님, 어제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산업기계 제조공장에서 염화티오닐 액체 누출되었다는 뉴스가 또 났고요,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 나오요. 이 염화티오닐은 보니까 호흡기와 관련돼서 치명적인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전체 전국의 61개소에서 3400여t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체 총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소방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오는 7월 19일이면 곧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대민 지원을 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쟁으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진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채 상병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우리 경찰청의 백브리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라이브방송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밀실, 은폐 이런 단어들이 오가는데요. 경찰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저희 방에서 기자들에게 구한 백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 제가 빌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실, 은폐라기보다는 라이브 방송이 안 되었지 모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브리핑을 상세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모두에서 우리 경찰청장님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시도청에도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현재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인, 사회 인사, 내부 등 해서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위촉한 겁니까, 외부 인사들은? 외부 인사 몇 명입니까, 풀 단위?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외부 인사 36명입니다.

○**이달희 위원** 36명은 언제 위촉한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제가 위원별로 위촉 날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2년 임기인데 21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임기가 끝나고 2기가 출범했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1년 4월에 1기가 위촉이 됐고요. 3년 임기를 마치면 그중에 끝난 사람도 있고 또 2기 위원으로 계속 연임이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위원마다 다르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 수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36명이 한꺼번에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번 회의에 그러니까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구성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정하셨나요? 몇 명이었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번에 11명이 했고요. 이번에 워낙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위원은 전원 뺏고 그다음에 학계와 법조인 위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법조인이 몇 명이었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법조인 4명, 학계 5명이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학계는 어떤 학계의 교수들로……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법학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들입니다.

○**이달희 위원** 법학 전공한 분 네 분에 법조계가 다섯 명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 반대지요. 그 반대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9명에 나머지 두 명은 어떤 분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나머지 두 명은 사회 인사로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왜 사회 인사까지 다 넣으셨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기본 구성인원이 11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계 10명, 법조인 10명이 있는데 20명에 대해서 전원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시간 되는 분이 9명이고 11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 인사한테, 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혹시 그 규정 알고 계신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정당인이라거나 선출직 출마 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이달희 위원** 이번 심의위원회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모든 사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것은 국민적 관심사항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수사결과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변호인 측이 청장님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고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권한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피의자 측의 심의 신청이 없어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관련 규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심의위 규칙에 나와 있고요. 거기 준용규정에 도경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도경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 이외에도 그동안 경북경찰청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21년 이후에 직권상정은 세 건 있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어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세 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요. 아마 헌남노 태풍 그때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것 한 건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세 건인데 나머지 한 건은 무슨 골프장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로 했다 하니까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짧게 Q&A를 해 봤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경찰청장님을 정권의 푸들이라 하고 또 검수완박하면서 검찰청 해체도 해야 된다 하고 공수처 수사 중인데 상설특검에 관한 이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니까 특검 하자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어디를 믿고 가야 됩니까? 국회에 불러서 항상 인민재판 같은 이런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달희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인민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청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제가 보니까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한 두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런 것 같은데 보도자료 보니까 지금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한 1년간 개최 안 하셨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상식 위원** 예, 빨리 대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9일 개최하고 1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경찰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이상식 위원**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을 외부에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자신들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믿어 달라,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참여한 사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중에서도 TK 말고 외부 인사가 누구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 출신? 있

습니까?

○이달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역 발언……

○이상식 위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달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식 위원 제가 지역감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회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속성상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기의 심의위원들이 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또 추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21년도에 할 때.

○이상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만든……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안 되는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이것을 바깥에 내세우면서 믿어 달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불송치의 근거로 내세운 또 다른 주장, 임성근 사단장이 월권을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청장, 거기에 동의합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검찰에서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월권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했습니다. 기소를 했어요.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장화 등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인정하고 이제 법리 논쟁으로 나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종양 위원님이나 배준영 위원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습니까, 공직자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이태원 참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인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지금 최장수 장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병력을 파견했을 뿐 지휘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이관됐다, 그래서 월권이다 이게 지금 경찰 주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것은 고등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 직권 행사의 형식이나 외형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적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칫 국가 작용의 신뢰를 해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사건, 지금과 같은 이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저히 직권 행사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병대, 얼마나 규율이 센 부대입니까? 그 부대가 비록 병력은 파견해 가지고 50사단장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그 해병대 부하들이 임성근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청장 대답해 보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임성근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선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요. 그러면 명령과 지시가 그대로 하달되어 가지고 그게 채 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임성근 사단장이 나와서 했던 일련의 지시들은 기존 수색 지침에, 6여단장하고 소방에서 협의한 지침에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판례도 지금 충돌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병 7여단장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보도자료에 쓰셨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7여단장하고 1사단장하고는 그 당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왜 다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나 조직문화, 군대문화가 가장 높은 사람의 명령과 지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 당시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서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직책이……

○이상식 위원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성근 사단장만 쏙 뺀 이유가 뭐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7여단장은 50사단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통제권한을 갖고……

○이상식 위원 청장님! 지금 작전통제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임성근 해병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의 부하들한테 영향력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영향력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있는데 그런데 왜 제외합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만 이번에……

○이상식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용산,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집권 여당, 대통령실에서는 한사코 부인을 하고 임성근 사단장 한 명 지키기에 올인되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질의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3분 주십시오, 저도, 3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안위를 인민재판에 비유한 적 없습니다. 오늘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정 지역 주민을 이렇게 명예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TK 지역에서,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 위원으로 들어오신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편향된 그런 똑같은 논리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명예훼손하는……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을……

○이달희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회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상식 위원님의 발언이 특정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폄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달희 위원 그러면 속기록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그것은 회의 진행 이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진행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후에 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입니다. 대통령 실의 외압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작년 7월 31일 안보실 수보회의 때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그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만 11시 54분경 02-800-7070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2분 뒤에 이종섭 장관은 수사 서류 이첩을 보류시켰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격노와 그 전화, 800-7070의 그 전화는 임성근을 빼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임성근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그때 1사단장? 임성근은 MB 정권의 NSC, 국가안보실의 당시 김태호 비서관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국방부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했고 당시 이종섭 장관이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봉화에 공천받아 나간 국민의힘, 그러니까 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했던 임종득 당시 행정관이었어요.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의 대표가 VIP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사람,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거예요, 거의.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과는 왜 중요했는가? 바로 그것이지요.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채 해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시점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알기로 전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저희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가 이것을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7월 5일 날 수심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7월……

○이해식 위원 수심위는 언제, 그 결과가 그 당일로 나왔습니까, 7월 5일 날?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요. 수심위는 개최가 되면…… 7월 5일 날 나온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문자풀을 했고요. 그래서 수심위까지 다 끝났고 이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논리 구성이라든지 마무리를 해서 7월 5일 날……

○이해식 위원 일정 조율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7월 5일 날 저희 판단으로 오후 2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일정이……

○이해식 위원 그러면 7월 5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7월 5일 금요일 날 수사심의위를 하고 다음 월요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런데 7월 5일 날 왜 했냐는 말입니다. 왜 1년, 11개월 가량 걸렸냐는 말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의……

○경찰청장 윤희근 그 11개월 걸린 부분은……

○이해식 위원 지금 11개월이나 걸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근……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시지요.

○이해식 위원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결정,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을 텐데 그냥 정치적 일정을 보면서 끈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북청장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해식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여러 가지 군의 특수성 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

○이해식 위원 됐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걸린 겁니다.

○이해식 위원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말입니다. 입법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첩을 보류할 당시에, 이첩 회수를 할 당시에, 수사 기록을 회수할 당시에—8월 2일입니다—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얘기

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를 해봤더니 경북청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경북청에서 수신한 사람이 이것을 도로 회수해 갈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 상부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는 그분의 진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들이 일부 아마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관실의 백 모 행정관이 국수본의 이 과장한테 연락을 했고 국수본의 이 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 당시 노규호 수사부장한테 그 지시를 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라, 이런 흐름이 지난 입법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이게 사실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이 될 수가 없지요.

○이해식 위원 경북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위원님,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금년 2월 5일 차로……

○이해식 위원 물론 없었는데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 회수하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차피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그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사하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 오면서 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 왔던 정쟁을 좀 종식하고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의 말씀들을 좀 들어 보면 결국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역으로 민주당이 이런 결론을 다 내려 놓고 답정너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사실 왜곡과 그리고 또 법리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은 이곳 우리 경북경찰청이 조사한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까 경찰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 상병 사망사건의 원인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혐의를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그 공수처도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행안위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의 논리 구조를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외압이 작용했다라는 데 바탕을 하고 있고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거다, 경찰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수사심의위원회, 민간으로 위촉되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구성되었을 거다라는 의혹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공개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의 결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경찰청장님에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 명단이 공개되었다라고 하는데 제1기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발족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4월 13일 이루어졌는데 이때 보도자료 배포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2차, 2기가 또 2023년 7월 11일에 발표했는데 이때도 보도자료 배포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권 위원 이때 그 위원들 명단 공개됐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부언 설명드리면……

○이성권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상징적으로 위원장은 공개를 합니다. 위원장은 공개를 하지만 여타 위원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보도자료 복사를 했는데, ‘제1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 위원이 16명 및 내부 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하고 위원장만 딱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명단이 공개됐다는 것은 일단 틀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장님, 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고요. 위원들이 소신껏 그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무일 검찰총장 있었을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되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권 위원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단이 공개되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성권 위원 안 됐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권 위원 똑같은 걸 준용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권 위원 그때 그런데 그 명단 공개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당시 명단 거부를 하니까 그것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했고요. 그 소송 결론이 명단 공개 거부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미 소송을 거쳐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특정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부실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 호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논란이 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경찰청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직 경찰이나 내부의 경찰들은 포함이 안 됐지요, 심의위원회에?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다 배제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경찰청장 윤희근 이번 11명에는 다 배제를 했고요.

○이성권 위원 다 배제했지요. 한 번만 더 설명……

○경찰청장 윤희근 다만 36명 풀에는 일부 현직 경찰 간부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처럼.

○이성권 위원 예, 그것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권 위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내부 위원을 두지 않았던 이유……

○경찰청장 윤희근 이번에 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권 위원 예, 내부 위원을 두지 않았던 것.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조계·학계 인사들 위주로 했고 그 20명에 대해서 다 확인해서 9명이 된다고 해서 했고요. 2명이, 최소 인원이 11명인데 2명이 더 필요해서 2명은 사회 인사 중에서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내부 인사를 배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애초에 1기 위원과 2기 위원의 구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북 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것은 확인……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위촉된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구성 자체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달의 위원님이 말씀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논리 중의 하나가 피의자가 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 사건은 직권으로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는 사안들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이성권 위원** 아까 직권상정이 경북에서 3건 있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건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전국적으로 직권으로 상정된 것은 21년 이후에 73건……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총 73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성권 위원** 그러면 결국은 73건이나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경찰청장이든 위원장이든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결론만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을 두고서 느낀 게 물론 정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을 신뢰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제도들을 불신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데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적하셨고 또 대단히, 실제 진행된

사정과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사실과 다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명단이 제가 공개된 적이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찰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오후 내지는 이렇게 미뤘는데 지금 다시 이성권 위원님께서 위원장 외에는 공개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명백히 이렇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 그리고 사회 위원들까지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규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성권 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본 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소위 말해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든지 손질을 하든지…… 그동안 공개돼서 운영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예민한, 정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저도 지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완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후로 우리가 같이 논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북청장에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 중에서 ‘20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9명이 돼서 11명의 정족수에 맞지 않아서 2명 사회 인사를 추천했다’ 이 말씀은 사회 인사가, 원래 풀 내에 없었던 인사를 추천했다 이 말씀인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아닙니다. 풀 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20명에게 다 전화했는데 말씀으로는 9명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 인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위원장님, 그 9명은, 기이 위촉돼 있던 사람이 법조계가 10명, 학계 10명이 있었거든요. 그 20명에 다 전화했더니 9명만 된다고 했고……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청장 직권 상정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내용상 대단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전체 건수를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소위 말해서 사건 관계인이 신청한 경우는 경북청 같은 경우도 144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1년에 1건 내지 2건인데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은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서 다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은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지금 수사해 왔는데 수사팀 내에서 이견이 많았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팀 내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충분한 토의를 하고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견이 없었는데 왜 수사……

그러면 언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청장은 결정하셨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해서 마무리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심의위원들한테 언제 전화를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삼사 일, 한 일주일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나중에 따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끝에 따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아니, 지금 내용이……

○**조은희 위원** 지금 혼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는 제가 사회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으로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7분을 쓰셔야지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다 돌아간 다음에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조은희 위원** 사회자하고 질의하고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사회자로서 중립성이 조금 기울어지십니다.

○**윤건영 위원** 점심 전이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지금 경북청의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건은 이 위원회가 규명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회자로서의 사회를 지금 위원 간에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짜가 7월 4일 그리고 채 상병 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채 상병 수사 결과 발표가 소위 말해서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7월 9일입니다.

지금 경찰청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수사팀 내에서의 이견이라든가 조사 결과의 판단에 대한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북청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결정한 내용이 이렇게 날짜적으로나 진행 과정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오해와 분란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심의위원회 날짜는 다른 정치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았고요. 저희가 수사 진행되는 것이 그 시점쯤 마무리가 됐을 때가 됐고 이견이 없었는데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던 것은 이게 위낙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 보자,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수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개는 내부의 의견이 갈리거나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되고 또 경찰청장 직권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경북청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인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 직접 개최해 본 적 있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금년에 처음 청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 직권으로 회부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본인의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대단히…… 수사팀과 수사팀 내부의 이견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치 임성근 사단장의 변론 요지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이 하실 말씀 아닙니다.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답변 듣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동안에 워낙 사회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러니 저희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 오류가 있는 건지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학자라든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한번 부쳐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외부 위원들도 다 빼고 이런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한번 회부해 봐서 판단을 받아 보자 그런 취지에서 회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문을 통해 가지고 더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예.

○**배준영 위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까지 발언을 마치기로 돼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쭉 내용을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이게 통상적인 의사진행보다는 뭐랄까, 저희 쪽에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 그게 다 공개됐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공개했다는 게 인터넷에서 찾으신 겁니까? 어떻게…… 제가 여쭤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 소수의 정해진 사람만 보도록……

○**위원장 신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것은 다른 차원인……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공개돼 있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의 정책의견서—2021년 11월 25일 발행된 자료입니다—자료 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현황을 여기다 대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특정한 단체가 그렇게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걸 공개했다 그러면 그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배준영 위원** 그게 공개된 자료라고 우리가 그것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사진을 다 공개했어요, 사진 전체를. 1기 때는……

○**배준영 위원** 그런데 참여연대가 그것을……

○**윤건영 위원** 1기 때는 아예 위원 사진 전체를 다 공개했어요, 증명사진같이 다.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부분은……

○**배준영 위원** 참여연대가 공개했다는 게 전부 다……

○**윤건영 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위원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소위 말해 경찰청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명단이 이렇게 사적으로 훌러들어 가거나 개인적으로 입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정책보고서에 공개돼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어야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소한, 그 지방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개돼서 운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미루어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성권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차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길게, 필요하다면 오후

예.....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좋습니다.

○**이성권 위원** 일반적으로 공개라고 하면 공개하는 주체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공개라고 하고 다른 데서 입수하면 그것은 유출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그것은 지레짐작해서 사진을 보고 이름을, 명단을 적든지 그런 방식인데 오늘 쟁점은 경찰청에서 자료를 출수 있느냐 마느냐,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법리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저는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료가 공개돼 가지고 유출이 됐다면 그것은 그 유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정훈** 유출이라고 단정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성권 위원**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정훈** 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간단히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계속 다람쥐 챗바퀴처럼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유출이 아니라 공개를 한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금방 보좌관 통해서 검색을 해 보도록 했는데 2021년 4월 13일 자 한국일보 기사에 ‘경찰청이 제공한’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청 제공’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2021년 5월 7일 경상북도경찰청 여기도 사진 제공 또 보도자료 ‘경북경찰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도 4월 17일 날 대전경찰청에서 공개를 합니다.

한번 경찰청장님, 아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사진 제공 등 이것을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 기자들도 이 명단을 아는 것은 그만큼 대변인이나 홍보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명단이 나온 게 아니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틀리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 부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간단히.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지금 실무자 기능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21년 4월 13일에 1기 국수분 수사심의위원 위촉식이 있었고요. 그 위원들이 전체 참석한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별이 누구누구다 한 것을 저희는 일체 제공한 바가 없고요. 지금 확인한 것으로 보면 그 특정 단체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래서 2기 때부터는 저희가 아예 이 사진 자체를 제공을 안 합니다.

○윤건영 위원 작년에 지방청에서도 제공했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신정훈 청장님,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장 신정훈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채현일 위원님의 자료나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게 유출됐다든가 입수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업무에 지장이 될 것, 업무 진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진도 다 공개하고…… 이 이야기는 사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 때 그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2기 때부터는 그 사진도 오픈을 안 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이미 공개한 사진이 있는데 왜 그렇게……

○경찰청장 윤희근 아니, 그러니까 일부 지방청에서도 저것은 좀 과오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신정훈 청장님, 그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개·비공개 여부가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한다, 이 이야기도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지금 팩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보고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던 관례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판단하셔 가지고 오후에 해당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금일 출석하신 산하기관장과 유관단체장들이 계십니다. 오후 회의에는 배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산하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에 관련된 질문이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인사혁신처장은 계속 배석합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산하기관장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께서는 오후 회의에 배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2시 반을 속개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잠깐 해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이달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민재판 얘기는 행안위가 아닙니다. 그 구절구절 이렇게 평가를 바로 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행안위에서는 요즘 수도권 편중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려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위원회의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지금 막 떨립니다, 가슴이. 오전 회의에서 동료 이상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사과와 함께 합당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말씀을 못 들어서 제가 진행 신청을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TK 말고 외부인사가 누구 있습니까, 다른 지역 출신?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본 위원이 특정 지역 인사들의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정치색을 덧씌운 것은 TK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상식 위원님은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지역감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그런 상식을 가진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원회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속성상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기의 심의위원들이 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또 추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가 오전 회의 내내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TK 외 외부인사가 누구인지 다른 지역이 출신이 있는지 대놓고 묻고 또한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마치 경찰청 간부들의 사적 인연으로 선임이 된 것처럼 단정하시고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일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지역 갈라치기 발언의 전형이며,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우리 각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정치색을 덧씌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우리 이달희 위원님 제가 오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인민재판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인민재판 말씀은 이달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최근에 채 상병 관련한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에 대해서, 막 전국 조야 각지에서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하는 양상이 인민재판 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 속기록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발언하는데 끊지 마세요.

○**이상식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달희 위원님, 여기가 인민재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갈라치기 그것은 정말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고, 제 자신이 벌써 TK 출신입니다. 경북 경주가 고향이고요. 저는 대구·경북 주민들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지금 그것을 굉장히 경찰에서 ‘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경찰 관계자들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면면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100%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1년 동안…… 재작년 2023년 6월 9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이런 형식, 허울 좋은 이런 수사위원회를 방패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자체에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 해당 속기록에 대한 기록을 인쇄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인민재판과 같은 이런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국회에 불러서’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딸려서 약간의 오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TK 말고 외부인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후단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그렇게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를 지금 두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곧이곧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특정한 단어를 씀으로써 국민들의 오해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회의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 사용에는 대단히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 의사진행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출석의 건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황인수 조사1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출석했어요.

○위원장 신정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선 재차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시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양해 안 돼요.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신분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위원님들 앞에서만 마스크 벗어서 공개하고 대중들 앞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용혜인 위원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대중을 대표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용혜인 위원 여기가 국회인데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순서를 받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우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신 조사1국장께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저희 지금 의회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사1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좀 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짚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본인의 신분 노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방금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지고 나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의 모습이 담긴 한겨례신문 기사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인의 사진 맞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공개돼 있는, 일반 언론에는 다 공개돼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 이것 굉장히 난센스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본인의 신분이라든가 얼굴이 다 노출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발언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다 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떤 논리로도,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것을 명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1국장 황인수 저를 도와줬던 분, 제 삼자의 재산적·신체적 안위가……

○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1국장 황인수 그 부분은 다른 언론들은 지금 현재 저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겨례신문만 그렇게 유독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융혜인 위원 여기가 언론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려면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1국장 황인수 향후 법적 책임은 한겨례신문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미 본인의 사진이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언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황인수 제1국장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1국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므로……

○ 이해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까?

○ 이해식 위원 예, 이것 관련이에요.

○ 위원장 신정훈 예, 그러면……

○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고 의회에 출석해서 자꾸 저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자체가 복무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1국장은 작년 채용 직후에 6월 27일에 진화위에 개인정보보호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1국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진화위는 요청서에 대해서 허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채용후보자 개인 의견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비공개에 대해서도 결국은 진화위는 승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사1국장은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직무상 명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런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김광동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사1국장을 적절하게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께서는 지금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그리고 본 국회에서 정상적인 답변이 어려운 황인수 제1조사국장의 신분 노출이 어려운 사유, 그리고 법적인 근거, 그리고 향후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복무규정이라든가 공무원법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걸 개선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지금까지 개선방안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규법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절한 방안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 지금까지 위원회의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은 대단히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굉장히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광동 위원장님의 책임도 대단히 조사1국장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이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의 아픈 역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그런 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사유와 방안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공문 제출받은 후에 여야 간사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수 조사1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인사혁신처장님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위원장 신정훈**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조사1국장 직위에 응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사1국장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사1국장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화위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관여하는 부분은 역량평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사심사를 거쳐서 법적으로 임용 절차가 적합한지, 적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별정직 고위공직자 채용 절차 과정에서 보면 인사심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채용 예정 직위의 결원 여부라든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라든가 채용절차 준수 여부라든가 제반 절차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드러난 결격사유에 대한 그런 어떤 심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절차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바로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1국장 관련해서 그 복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에서 복무감찰을 할 수 있나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보고 하십시오. 장관님한테는 발언 시간에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관련되어진 직무 복무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와 권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 관련 과정에 대한 허점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함께 또 행안부장관께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행안부가 복무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 관리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우리 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여서 집중호우 피해처럼 좀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안 묻고 넘어갈 수 없어서 윤희근 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뭐를 하라고요?

○**용혜인 위원** ‘변호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변호를요?

○**용혜인 위원** 예, 없으시겠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이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께서 지탄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찰로서 공직에 몸담고 경찰청장까지 지내고 계신 청장님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용혜인 위원 예, 국민들의 그런 지탄에 대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혜인 위원 전적으로 신뢰한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과 다르다고 해서 수사를 그 이유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용혜인 위원 수사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데요. 사실 경찰의 수장으로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인데 뼈저리 예상되는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는,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확하고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칸에 ‘내부 논의 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굳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해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뼈저리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7월 19일까지 했던 모든 저희 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수사 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렇게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목조목 달아 놓은 변론의 논지도 형편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수중 수색을 의미하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을 그냥 단순하게 읊어버린 것이 됐고요.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그냥 옷만 바꿔 입으라는 지시인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의 매서운 현장지도 질책은 대대장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단순한 질책이 됐어요.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 같은 이런 사단장의 발언은 같은 카톡방에 있었던 여단장 이하의 부하들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험하면 입수를 거부했어야 됐다라고 했던 7월 26일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위법한 외압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도 당하고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그것이 위험했으면 거부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경찰은 변호인이 되어서 그 논리를 똑같이 수사 결과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만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무죄라고 확신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 개인의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용혜인 위원 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저는 경북청 수사팀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 의미 없는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추후 특검 등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퇴임하고 나신 이후니까 상관이 없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물으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경찰 수장으로서 마땅히 대국민사과를 하셔야겠지요.

아무리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이런 논리를 형편없이 1년 동안 조각을 하면서 불기소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경북청이 아무리 위법적으로 이첩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무단으로 넘겨 줬다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에서 이런 노골적인 일은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경찰의 변론요지서나 다름없는 이 보도자료를 수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특검이 필요한 수많은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에 경찰이 장작 하나를 더 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돼서, 예방이랑 대책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방재정 관련된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용혜인 위원 2023년 지방세 세입 잠정치를 받아 보니까 약 112.5조 원입니다. 제가 지방재정365 데이터를 보니까 2012~2022년까지 10년 동안 지방세 세수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평균 8.2%p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방세 세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보다 5.2%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 이것을 지자체들이 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내국세 감소분에 따른 배분액을 전액 반영하지 말고 분할해서 반영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제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제가 찾아서 결산 보고서를 보면 분할 반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옳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연말에 3조 원 정도 지급한 건데 원래 10조 정도 감액해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것을 7조 원 규모로 좀 낮춘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올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국세 세수 적자가 예상이 되잖아요. 5월까지 국세 진도율이 41%에 불과했고 5년 평균보다도 낮고 56조 원의 세수 평균이 났던 작년보다도 더 떨어지는 진도율인데 결국에는 이 국세 감소가 지자체의 세입 감소로 직결되는 이 구조하에서, 여기에 지난해 보통교부세 3조 원가량 더 지급한 것을 올해 정산해서 더 감액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용혜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 거지요? 너무 반응이 없으셔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셔서……

○**용혜인 위원** 그래서 지난주 행안위에 상정된 민생회복 지원 특별법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하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의는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마쳐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좀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방재정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작년이 한 11조 넘게 평크가 났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많이 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생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가와 지방 재정에 큰 부담, 큰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용혜인 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갑의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의 채현일입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언제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금년 2월 5일 날 잤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작년 채 상병 사건 그때는 어디 계셨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경기남부에 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첩되고 회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내용은 잘 아시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현안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청장님인데…… 가장 큰 이슈이고 경북경찰청님이 소관한 업무 중에선 가장 핫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 인수인계 못 받았다 그것은 말이, 하실 얘기가 아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위원님, 해명대 수사단에서 서류를……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첩·회수된 3주일 동안의 과정입니다.

작년 8월 2일 날에 조사결과보고서가 경북청에 이첩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박종현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이정철 총경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기록 회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후에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이 2건의 전화를 받습니다.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이정철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기록 회수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북청 수사부장은 이 내용을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북청 실무라인에게 하달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고하고 하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3주일이 지나서야 접수하고 바로 2시간 후에 접수하자마자 국방부로 반송, 회수 조치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저런 과정을 거쳤었는지는 모르는데 왔다가 회수돼 가고 이런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8월 2일 사건이 이첩되고 경북청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사건보고서에 대한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라인에게 하달했어요. 그것은 경북경찰청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개시 요건, 범죄 협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 어딘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3주일 동안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8월 23일 날 반송을 하고 회수 조치를 합니다.

그동안에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전부 다 모르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하니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는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범죄 협의가 인정되어서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이송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북청장에게 보고가 되고 실무라인에 하달됐어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제가 알기로는 8월 2일 날 왔는데 이첩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를 회수해서……

○채현일 위원 아니, 이첩이 돼 가지고 접수를 안 한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것은……

○채현일 위원 그런데 이첩을 하면……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신은……

○채현일 위원 이런 중요한 현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 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수사해야 될 사항을 바로 반송,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방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당연히 범죄 협의를 인지했고 수사를 착수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국방부의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무와 권한이 없는 일들을 하도록 지시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을 방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의 주체인 경북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권으로, 그것도 1년여 지나서 수사심의위를 갑자기 개최하고 짜맞추기식 면죄부 수사 결과를 발표까지 한 겁니다.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1년 경찰 수사심의위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에 전국에서 1만 227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99% 정도가 고소인·피해자,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직권으로 부의한 것은 총 73건, 경북청은 3건에 불과합니다. 퍼센티지로 말하면 0.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민한 시기에, 국회에서 특검법 제의결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논란된 시점에 또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 사건이 워낙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쭉 수사를 해 왔는데 시점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월 말쯤 해서 거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해서 채 상병 어머니께서 1년 되기 전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채현일 위원** 보통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사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그렇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수해 현장 다녀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다녀왔습니다.

○**한병도 위원** 저도 어제 수해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이 참 처참했습니다. 아마 장관님 다녀오신 지역과 이번에 전라북도 수해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한 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난 지역이, 익산시나 부여군 이런 데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또 수해가 돼서…… 지금 피해가 똑같은 지역에, 제가 현장을 가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관련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 느낀 것이 그전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후에 거기를 복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서 집중폭우가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그것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예방 차원으로 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안부에서 이번을 계기로 복구 중심에서 그 지역들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검토,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설계대로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5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고시하는 것으로 2018년에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지방비로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용량이 큰 배수펌프장 하려면 막대한 예산으로 착공 자체도 못 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향후에는 설계 빈도의 상향 및 인프라 개선까지도 국가가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펌프장 대상으로 지금 가동훈련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작동 여부만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년 강우량을 기반으로 충분한 용량인지 그 용량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NDMS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병도 위원** 이게 피해가 막 한번에 나면요, 특히 면 단위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셔서 아직도 면에서는 교육을 하는데 이 기간 자체가 7일인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하되 초기 재해가 나면 정신이 없으니까 기간 자체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찰청 경북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북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놀라운 게 이게 경북청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게 보도자료인데요. 정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상 수사 결과 발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래서 변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수사 보고에서 ‘불송치 결정’ 해 가지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사례들을 1, 2, 3, 4, 5, 6, 7, 8, 9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리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법리를 그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런 사례들은 참 보기 힘들거든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걸 조목조목 반박하듯이 구체적으로, 향후 페이지를 보시면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수사 발표예요. 이건 언론 대응용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느끼면서 이건 변호인이 하는 거지, 수사 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유무에 대한 그것만 발표를 하면 되지 뭔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언론 아홉 가지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수사 결과 발표

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수사 과정도 보면요, 지금 경북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의 핵심이 수중수색 지시에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예하 대대장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맞지요? 엇갈렸잖아요.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예하 대대장 간의 진술이 엇갈렸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한병도 위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질조사하셨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대질조사는 7여단장하고……

○한병도 위원 11포대장 간의 대질조사만 실시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거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한병도 위원 접점인데 그러면 왜 임 사단장은 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임 사단장은 포11대대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지휘권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A 대대장은 7여단장을 통해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경찰 발표에서 오인했다고 합니다. 오인했던 어떻든 대대장의 주장은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달이 엇갈리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임 사단장 관련된 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대질신문을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요, 좋습니다. 지금 이견들이 있어요. 심의 공정성을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경북청 수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에 ‘임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하고 같은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 누가 유출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원래 비공개 원칙인데……

○한병도 위원 비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수사 결과도 발표 안 했는데 대대적으로 발표 누가 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것은 저희가 문자풀로 줬습니다, 최종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만.

○한병도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내용을 문자풀로 전달했다고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내용을 준 게 아니고요. 내용이 몇 명은 송치하고 몇 명 불송치한다 이것만……

○한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했냐고요. 누가 유출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발표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게 끝나고 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는 송치 몇 명, 불송치 몇 명 이것은 저희가 문자풀을 줬습니다.

○한병도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해양수도 부산, 해양 중심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여기 계신 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채 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완전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 결과 확인 이전에, PPT 좀 띠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형사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사법체계 내에서의 과실책임, 형사책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든지 수사를 받는다든지 재판 중이 되면 대부분, 지금 인사혁신처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징계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말…… 또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비난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명예 제대를 시켰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보다도 군인의 명예나 공무원의 명예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법체계라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법체계를 가지고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계속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좀 넘겨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법체계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해병…… 저는 경찰 발표대로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해병 A사단에서 신속기동부대하고 포병여단하고 직할부대를 육군사단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은 당연히, 대민지원작전, 수색작전, 복구작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50사단으로 넘어갑니다. 50사단으로 넘어가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군 일반적인 지휘권이라는 것은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분이 아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셔서 이야기를 제가 미리, ‘너 그것 때문에 편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까 봐 그런데 제가 사실 임성근 사단장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마는 알고는 지내는 사이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사단장으로서의 저 작전 외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전에 한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들이 작전통제권이 50사단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법률적인 책임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실치사의 책임은. 하지만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행정적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형사에 의한 사법체계다라는 말씀을 먼저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야기 할 시간이…… 다음, 두 번째로 사건 이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따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장관을 했습니다. 장관을 했는데 바쁜 시간에 결재가 우루루 들어옵니다. 참모들이 우루루 들어와서 ‘이거 언제까지 어디에 넘겨줘야 되는 서류입니다’ 하면서 자기 입장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그래 알았어, 그래 이야기해 봐’ 하고 사인합니다. 사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다음 어디 행사 간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아니야’ 또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지시는 법률적으로 결재 권한이 장관에 있으니까 취소 권한이 장관에 있다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PPT 넘겨 주세요.

문제는 장관이 그렇게 분명히 업무상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그걸 갖다가 자기 임의로 이첩을 시켰다는 데 문제인 거지요. 이첩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의 명시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서 했다 하면 그 부분은 명확한 지시이고 또 그 권한 자체가 국방부장관에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니까 국방부장관이 그걸 막았다 그런다면 그것은 이첩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로 인해서 이첩 자체는 저는 사실 무효라고, 굳이 받아 올 필요도 없다, 이첩 자체도 무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이 명단 공개 부분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판례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딱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북지방청장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서 했는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심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직위,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면 심사위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평가에 소극적이 되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의 성명, 직위, 직업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판결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한병도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요, 그전에 심의위원에게 배포된 사건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건설명서와 심의회의 종료 후에 작성된 심의결과서가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전체회의 전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의원실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역시 공개·비공개를 따질 내용입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심의 과정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우선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 명단과 더불어서 관련 서류가 그래도 진실을 이해하는 데,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직접적인 설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공개 원칙 하면서 구구한 억측이라든가 또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이 문제가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고 또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번 본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규정에 근거해서 제출 여부를 확실히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오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경찰청의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 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도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지금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면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경찰청에 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한 번씩 발언할 때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오전에 시작할 때 아니면 오후에 시작할 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정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회의 도중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은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질문 시작 전 그리고 2차 질문 시작 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관련 자료, 특히 박정현 위원님이 오전에 제기한 이첩 관련이라든가 그 외에 반송된 과정에서의 그런 자료 그것은 당연히 제출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까지 함께해서 청장께서 본질문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듣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경찰청장님과 경북경찰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요 경북청장님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번 수사 발표를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기한 거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경찰 자존심의 문제고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지도 또는 조언을 했다라는 거고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아니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경찰청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임성근 사단장의 지도 또는 조언이라고 보신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구체적인……

○윤건영 위원 짧게 이야기……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저는 언급한 기억이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요……

○윤건영 위원 그러면 지도·조언입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경찰청장 윤희근 이게 수중 수색을 누가 하라고 한 거나 이거거든요.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지도·조언인지 아니면 지시인지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2개의 정확한 뉘앙스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조언·지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북청에서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보면 이걸 지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윤건영 위원 맞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경북청 발표를 경찰청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도나 조언, 아니면 지시, 청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는 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윤건영 위원 그러면 지도 또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발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경북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어 가지고 기동대가 출동을 해서 그 집회를 담당할 때 경력이 부족해서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영등포서 경력을 데리고 나와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영등포서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영등포 소속 경력들에게 ‘후문으로 가라. 그리고 빨간 옷을 입어라. 바둑판식으로 정렬해서 해라’라고 하면 그게 지시입니까, 지도입니까, 청장님? 제가 볼 때 그건 지시지요.

1사단장이 와서 지시를 하는데 그걸 지도나 조언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번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북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대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어길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대대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럼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단장의 여러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지도 또는 조언으로 해석을 합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볼 텐데요.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 몰랐던 간부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여단장의 지시와 사단장의 지시가 서로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 충돌하다가 결국 사단장 지시에 따라서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경찰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만약에 이게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 조언이나 지도였다면 사단장의 업무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청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윤건영 위원 그러면 1사단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님 설명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북청장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하라고 한 지시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7여단 수송대장 윤 모 소령의 진술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윤 모 소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셨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아주 유력한 증언을 했던 게 포병여단 작전과장의 진술도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 소환조사했나요?

경북청장님, 답변하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임성근 사단장의 수중 수색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언, 진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경북청의 수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허점투성이 수사가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조사했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조사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조사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윤건영 위원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 두 분의 진술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하는 게 이 두 분이고 임성근 사단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분을 대질신문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대질신문 안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경찰에서 받아쓰기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 진술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은 언론에 보도까지 됐어요.

제가요 자료를 받아 봤더니 경북경찰청에서 11개월 동안 67명을 조사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10일 동안 73명을 조사했어요. 단순하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핵심 진술에 대한 진술을 하신 참고인들도 조사를 안 하고 또는 대질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경북청의 수사 결과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대질조사는 대질조사의 필요성이나 의미가 있을 때 하는 부분들이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열흘간 수사한 것은……

○윤건영 위원 아니요. 방금 대질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윤건영 위원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는 거고 이 두 사람은 수중 수색으로 유추할 만한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대질신문 대상이 아닙니까, 정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한쪽 이야기만 듣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만 들으니까 받아쓰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수사의 아주 기본이 대질신문 아니에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야기하면 양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봐야지요, 왜 일방의 이야기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ABC 아니에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수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진술이 있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저희들이 압수한……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 반대편에서 진술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분들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질신문을 안 하냐는 질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이 바이블이에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질신문을 해서 정확하게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철문 경북청장님,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마 이 사건 전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모를 지금 다 숙지하고 오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왜 본인에게 불리한 아니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계속 ‘모른다’ 이렇게 회피성으로 일관해요? 그러면 뭐 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국민적 의혹이 경북청에 쏠리는 이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까지 출석하면서 모든 자료에 대한 숙지와 거기에 대한 자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 회피하고 아니면 뭉개고 이렇게 가 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어요?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현장 최고의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 해 주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경북경찰청장님, 방금 들어가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시지요.

먼저 경찰청장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경북경찰청장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이외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심의위원회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수사한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모경종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직접 본인 직권으로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왜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경종 위원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직권상정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통상적이지 않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국민의 관심이 크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한 가지로 결정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의 결

론을 내기 위해서?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지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 않으시지요, 당연히?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수사심의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겠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수사심의결과서 당연히 보셨겠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뒤에 붙어 있던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견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안 붙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이견이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경찰청장님, 월권이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모경종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근 사단장 수사 발표를 보면 ‘월권행위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위법행위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마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월권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월권행위가 다른데 그렇다면 월권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위법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월권행위는 위법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월권행위는……

○**모경종 위원**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6월 10일 탄원서를 제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이번 경찰의 발표가 탄원서의 의견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은 아니다. 현장 방문과

수색 방식에 대한 지시는 의견이었을 뿐 부하 직원의 해석 문제다'라고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그런데 경찰의 판단도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은 아니다.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저희는 수사 결과 나온 대로 말한 겁니다.

○모경종 위원 군사법원법이 왜 개정됐는지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수많은 군 의문사 사건이 있었고 성범죄 사건도 있었는데 지휘부 책임을 인정 안 하고 부실수사 책임자 처벌 안 해서 지난 2021년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지금 우리 경북경찰청 같은 분께 넘긴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임성근 사단장이 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현장 통제해야 되는 대대장은 사단장 있는 곳으로 가서 외적 자세 확인하라고 시키고 티셔츠 잘 보이게 말하라 말하고 도로 정찰하는 장병들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합참과 2작사의 단편 명령에 담긴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는 해병대 1사단에서 누락되었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붙어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임 사단장의 말에 소방과 논의한 수색 장소는 휴지조각이 되었던 말이에요.

경북경찰청장님,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모경종 위원 상명하복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경찰에도 어느 정도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군대는 애초에 일반적인 사회랑 많이 다릅니다. 지휘체계랑, 지휘체계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상명하복이 기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말 한마디, 상명하복, 위계질서 철저한 군대에서 의견과 조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 작전에서는 작전통제권 자체가.....

○모경종 위원 작전통제권 이야기 계속하시는데요, 저도 최전방에서 GP장 복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오셔 가지고 '저 앞에 시야가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 이건 지시입니까, 조언입니까, 아니면 지도 편달입니까? 사단장급의 말 한마디는 그 하나하나가 다 지시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군대의 문화고 군대의 계급, 상명하복의 문화예요.

사고 이를 전에 소방청이랑 협의해서 수변만 수색하기로 했고 사고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소방청은 수변 수색은 중지하고 도로로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일에도 사고 지역에 보트랑 드론이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수변 수색을 중지하고 도로에 있던 병사들을 밑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했습니다.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의 안전대책을 확보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위험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가슴장화라고 해서 그것을 수중의, 수중 수색을 하라 이것 은 아니었거든요.

○모경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장이 ‘저 앞이 좀 안 보이네’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것을 치워라라는 지시가 함축되어 있는 걸로 군대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는 특수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지시와 행위가 없었다면 해병대원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방과 논의한 대로 수변 육안 수색을 진행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위험한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처럼, 그 전처럼 명령을 내린 또는 지시를 한 그런 책임 있는 사람만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 말씀대로 부하 직원들이 위험한 지시를 했다면……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에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 여기에서의 위험한 지시, 이 상관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서의 상관은 누구예요? 안전하게 수색하라고 했던 합참입니까, 2작사입니까? 아니면 ‘대피해라. 수중은 본인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소방입니까?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 만약 파견 나간 부하 직원이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위험한 곳에 갔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책임지실 겁니까, 안 지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두고 경찰 조직과 일선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권의 충견이 됐다’, 경찰을 개에 빗대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근 청장님, 정권의 충견이 됐다, 개가 됐다는 건데요. 이런 비난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드릴 말씀은 많지만 굳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요 저희 경북 청의 수사팀 또 기타 우리 14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사실은 자궁심을 상당히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김철문 경북청장님, 좀 크게 얘기하시고요.

이번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셨는데 충견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저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정권의 충성스러운 개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상당히 모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한 논평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조은희 위원** 민주당은요……

잠깐만요. 잠깐 정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위원님들 발언을 듣고 의사진행 내지는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민주당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두고도 ‘대통령 심기보좌위원회’라면서 조롱 섞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꼭 이런 비난 세례를 퍼부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돼 있을 때마다 막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을 때—법카 의혹일 때요—‘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찰을 폄하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수사한 부산경찰청을 향해서는 ‘경찰이 정치테러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니까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하고 있다’고 조롱했지요.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아까 대질신문 얘기하셨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 내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여단장이 지시를 내렸다’, ‘제11포병대 대대장이 지시를 내렸다’ 이 두 사안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질신문은 여단장과 제11대대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경북청장님, 발표를 보니까 ‘해병대 11포병대 대대장의 지시가 있었다.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면서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한 것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라는 결론인데요.

11포병대대장은 누구한테 지침을 받아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경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11포병대대장은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11포병대대장이 포병 산하 대대장들한테 본인의 판단으로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 승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포병7대대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혹은 7여단장을 수중 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지목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리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대대장 밑의 11대대장이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그 전파를 받았던 7·3 그다음에 그 휘하의 장병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사단장인 건지 연대장인 건지

잘 모르니까 ‘이것 다 사단장의 지시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수사는 다 해서……

○조은희 위원 포병7대대장으로 하여금 그런 진술을 받으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이번 지시된 것은 포11이 포7한테 그렇게 전파를 한 겁니다. 전파를 해서 7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수중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11포병대대장에게 정확하게 ‘내가 위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밑에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을 받으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받았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명쾌하네요. 그러면 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네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것은 6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의 대질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여단장과 11대대장은 대질신문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대질신문 결과 어떻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대질신문에서 포11대대장의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전파를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때 11대대장이 그렇게 했고 여단장도 그렇게 ‘내가 지시한 바 없다’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이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여단장의 지침은 ‘해병은 수변, 무릎 장화까지’, 애시당초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포11에 하고, 두 사람의 접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고 거기에서 그러면 명확하게 물어보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포11이 임의로 ‘허리까지 들어간다. 내가 다 승인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전파가 되면서 수중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위원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성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 황인수 국장이, 저희 마스크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김광동 보도에 난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희 위원 그냥 부적절한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15시5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50일간의 강제구금, 물고문, 폭력행사가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1기에서……

○ 김성희 위원 과거사 위원장 아니세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1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1기에서 진실 규명 났고 다시 재심 사건으로 가서, 50여 일간의 형사 절차상 고문 등 문제가 있어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입니다.

○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역시도 간첩인데 형식상의 문제로 무죄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지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문이 있었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사 결과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희 위원 황인수 국장 발언을 좀 더 볼까요?

지금 PPT 내용 보시면 '고문으로 조작, 재심 끝에 무죄. 이렇게 되잖아요', '조작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과거 절차상의 하자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되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간첩을 한 거는 맞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1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진실 규명, 희생 사건이고 재심 결과 무죄 결정 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성희 위원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직접 고용하신 조사 1국장이 '간첩을 한 것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어떤 맥락에서 말이 됐는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 김성희 위원 그러면 살펴봐서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해임 하시겠어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아직까지는 해임 사유와 관련돼서 얘기하기는……

○ 김성희 위원 아니,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린, 대한민국 국가가 무죄 판결 내린 건에 대해서 일개 공무원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늘어놓으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해고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장님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사법부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판결서와 또 발언의 내용, 구체성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몰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조사1국장이 직원을 상대로 한 그다음 발언 한번 보시지요.

왜 응시를 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간첩을 한 게 맞는데 2007년에 간첩 한 것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오고 싶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왔고 그래서 1국장을 뽑는다고 해서 이번에 응시를 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인수 국장은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던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였던 국정원의 사람이—그 당시는 중앙정보부였지요—이제 이리로 파견 나와서 자신의 조직에 대한 명예 회복을 하려고 사실상 진화위를 깨려고 온 사람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맥락을 더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면접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위원장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김성희 위원 질문이 어렵나요? 면접 때 이런 상황을 아셨으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다음 보시지요.

조사국 상대로 했을 때 황 국장이 실토를 합니다. ‘제가 입사 지원 응시원서에도 썼고 다음 면접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진도 간첩단 사건은 고문 조작으로 재심 끝에 무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입사 지원 응시에, 2007년에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인권 유린 사건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2009년에 무죄가 된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실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응시했다는 얘기를 응시지원서에 썼다고 하는데 이걸 못 들으셨다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저는 응시지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김성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응시지원서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어요, 자료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응시지원서를 제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김성희 위원 면접, 보시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결과로 판단할 뿐이지.....

○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 김성희 위원 면접 볼 때도 했던 이야기라고 중언했으니까요 면접 내용하고 응시지원서를 의원실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지금 면접심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성희 위원 면접심사 결과하고 응시지원서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본인이 간첩인 건을 간첩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왔다고 직원들 상대로 강연에서 공언했잖아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그건 구두상으로 했을 뿐이지 지원서나 서류전형에 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희 위원 ‘입사 응시지원서에 썼었고’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입사지원 응시지원서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예.

○ 김성희 위원 지금 조사1국장이 1국 직원들 70명을 모아 놓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사지원 응시지원서에 썼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구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자료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진실·화해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 위원장 신정훈 지금 김성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서류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구두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확인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 위원장 신정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확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방금 전에 지금 김성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구두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했느냐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저는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 혹은 제출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그 문제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김성희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님하고 경북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힘드시지요? 힘 안 드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괜찮습니다.

○양부남 위원 힘드실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양부남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먼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인지서가 이첩된 사건을 이번 채 해명 사건처럼 이첩서를 반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가 사실 그런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를 앞두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했더니 이 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군에서 이첩됐던 인지보고서를 군으로 반환했던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 건을 포함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3건 있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2건은 어떤 경위로 반환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양부남 위원 예.

○경찰청장 윤희근 그래서 우리가 수사 대상이 되려면 그 사건 발생일시가 법 개정 이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양부남 위원 그래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한 게 아니라 경찰 자체로 판단했을 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반환했다는 취지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번 건은 왜 반환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한테 수사를 이첩한 해병대……

○양부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왜 반환했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수없이 언론에서도 이슈가 돼 있고 본 행안위에서도, 법사위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경북경찰청장님, 이것 왜 반환했는지에 대해서 백불 할 때 관련자가……

한번 띄워 보시지요, PPT.

(영상자료를 보면)

왜 반환했는지에 대해서 백불에 답변이 이렇게 됩니다. 군과 경찰이 서로 협조하도록 돼 있어서 반환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것 언론에 나온 것 그대로

따온 거예요.

경북청장님.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군과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도록 돼 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 관련? 뭔가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군과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대통령령 3조에 보면요 상호 협력의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검사, 사법경찰관 또 우리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며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래 가지고 상호 협력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규정 아닌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양부남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넘어간 기록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따져 보면 우리는 채 해병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에너지가 소진돼 있고 국민적 의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아주 중대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첩된 수사인지서에 의해서 경찰은 반환할 의무도 없었고 수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첩된 인지서에 의해서 충실히 수사를 해서 임 사단장의 책임이 없으면 무혐의 하고 있으면 검찰로 송치를 했으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경찰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권이 있음에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방부로 반환함으로써 엄청난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반환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없어요. 오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지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와 저희 경찰의 기관과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제가 끊어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주체는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럽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염려를 가질 겁니다. 앞으로 채 해병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가 외부기관의 누군가가 수사 중단해라,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하면 또 이런 짓을 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정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면 경찰, 수사권을 받아서 수사할 자격 없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일은 없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심의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사 1년 했다고 했지요? 이번에 수사를 총 몇 개월 했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11개월……

○양부남 위원 11개월.

수사심의위의 심의 시간은 몇 시간 걸렸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2시간 30분……

○양부남 위원 2시간 11개월 수사한 내용을 2시간 30분에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들이 수사기록 봤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기록 전체는 못 보고요.

○양부남 위원 못 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양부남 위원 볼 수도 없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11개월 수사한 사건기록을 어떻게 2시간 반 만에 보겠습니까?

그다음, 경찰이 사건 설명하지요, 수사심의위 상대로?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사건 개요만 설명했습니까, 경찰이 불송치다, 송치다라는 경찰의 의견도 이야기했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내가 정보공개 요청할 테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의견 이야기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경찰, 피의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측의 사람들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지금 통상의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반대 측에서도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들려리가 돼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사건 개요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견까지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했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수사심의위원회들의 구성 멤버나 이게 다 공정하다 치더라도 11개월 수사했던 그 방대한 수사기록 볼 수도 없고 2시간 만에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요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견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수사심의위 하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측에서 수사심의위를 했는데 경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게 몇 %나 됩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양부남 위원** 이게 들러리예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에서 경찰하고 의견이 같았다고 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에 신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많은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또 범치에 따른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아니요'로 답변 주시거나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경찰 예규상 위원회 심의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취지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개인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정보공개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수사 보안 유지와 또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수사심의위원들에 대한 보복 또는 회유 등 위험 때문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 수사 심의도 다수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의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에 다른 사건의 수사 심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다음으로 순직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 보안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수사 보안이 필요하여 진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상부 지시하는 무관하게 임의 지시하였다며 주 책임자가 11대 대장이 될 것이고 임의 지시하지 않았다면 누가 지시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11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임의 지시했는지 여부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임의 지시가 핵심 쟁점이라면 여기에 대한 면밀

한 조사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임의 지시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7여단장 및 7대대장 등 주변인과의 사고 전후 대화 및 정황 이런 부분도 다 조사되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런 부분들 다 대질 수사도 하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욱 위원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같은 것들도 조사가 되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11대대장 자백이 있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임의로 판단…… 임의대로 전파를 했다 이런 진술을 들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임의대로 전파를 했다는 말은 상부의 지시 없이 본인 결정과 본인 판단으로 전파를 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전파를 했다……

○김상욱 위원 본인의 판단입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본인의 판단으로 전파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자백이 있었다면 보완 증거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잘 못 들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보완 증거도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회의 때 다수 참모들이 들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참모들의 진술 증거들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포병단이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임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추정입니까? 그러니까 11대대장이 우리 포병단이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수중 수색을 임의 지시를 했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김상욱 위원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관련자들 진술이라든가 그 당시에 포11이 포7이라든가 포3 이쪽의 본인이 허리까지 우리는 들어간다, 이것은 다 승인받았다 이런 것들을……

○김상욱 위원 참고인 진술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김상욱 위원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김상욱 위원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는 수사 결과 입증 자료가 없다는 말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가슴장화는 통상적 활동에도 지급될 수 있는 물건이고 수변 수색과 수중

수색, 다른 것으로 각 수사한 것이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김상욱 위원** 7여단장은 기소의견 송치하고 1사단장은 불송치했는데 11대대장의 임의 지시가 사안의 핵심이고 11대대장의 임의 지시 등을 감시·감독할 또 업무상·상황상 직할 상관이 7여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좀 다른 사안인데요.

시청 앞 다중 교통사고로 시민들의 충격이 큽니다. 가장 큰 충격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었지만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약한 것이라서 차량 충격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성능 인증을 강화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선 시간이 걸린다면 일부 위험한 곳부터라도 먼저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순차적으로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연구해서 위험한 구간부터라도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울러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의 기본소득 지급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비용이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13조~18조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장관께서 추계한 필요 예산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의 기본소득 지급에 관해서 균등 지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차등 지급 논의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차등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층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러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욱 위원** 물가 폭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경제의 뇌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물가상승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라든지 다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상민 장관님 맞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외로 나가시면서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16자 지시를 해서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약간의 조롱도 당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춘생 위원님의 질의에 장관께서 ‘대통령은 포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저도 포괄적 지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16자 지시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대통령이 재난에 대해서 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2022년 수해 당시 반지하 침수 있었지요. 그때 칼퇴근하시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때 그런 보도를 봤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때 장관 아니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장관 아니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아니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도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대통령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지요.

○**박정현 위원** 아, 행적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대통령님 퇴근 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2023년에도 오송 참사를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순방을 강행하셨지요,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는 제가 직무정지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재난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 이 16자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16자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문해력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이번 장마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저렇게 되어 있지요, ‘이번 장마에도’. 이것은 작년 장마처럼 하라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년 기록 경신을 할 정도로 수재가 크니까 더욱더 잘하라는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 장마에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작년에 오송 참사도 있었고 해병대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언어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번 장마에는’이 ‘이번 장마에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앞서 본부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여러 재난적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지금도 부여 같은 경우는 3년째 계속 집중호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은 좀 비가 소강상태이기는 한데 ‘장마에는’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특별재난지역 요청하는 곳들이 많지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미 지금 작업에 착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어차피 답변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말씀,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정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이 실천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실천의 바로미터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희근 청장께서는 여러 번 이번 경북청의 수사 결과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경찰청으로서 동의한다…… 제가 물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정현 위원** 존중하는 것과 동의한다는 건 같은 뜻 아닌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맞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박정현 위원** 경북청의 조사·수사 결과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 얘기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정현 위원** 글쎄요, 불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청장께서……

저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 첫 번째 단추가 해병대 수사단 자료 회수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수당한 사건이지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회수당한 게 적법한 건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회수를 당했다’, 자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좀 저기 하시는 건 좀……

○박정현 위원 표현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은 단호하게……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는 당연히 문제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동의한 겁니다, 회수하는 데.

○박정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적법한데?

○경찰청장 윤희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 못 준다고 지금 답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시나요?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셨다면…… 공무원들은 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적법한 문서를 주셔야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적법한 것과 제가 그것을 제출하는 건 다른 차원인게요, 당시 그 이첩에 관한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지금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것이지……

○박정현 위원 문서가 어떻게 수사 사항이 됩니까? 문서는 그냥 문서일 따름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왜 이첩했는지, 왜 회수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적법, 불법의 판단하고는 다르고요.

○박정현 위원 저는 회수 자체가 전자정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정부법 제28조 2항에 의하면, 경북경찰청에 온나라시스템의 공문이 왔지요? 경북청장님, 공문이 왔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박정현 위원 공문이 왔으면 공문이 온 도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첩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수사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아니, 이첩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발생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기관 회수를 한 겁니까? 회수 조치를 무슨 근거로 하신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듯이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이라는 그 대전제하에 그쪽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상호 협력…… 아니, 더군다나 지금 회수 기관도 다르잖아요. 공문 발송

기관이 해병대 수사단이고 회수 기관은 국방부검찰단입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는 당연히 해병대는 국방부 예하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해병대 수사단하고 국방부검찰단이 같은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면 해병대는 어디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국방부 전체 소속인데 업무 분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해병대 수사단은 당연히 국방부 예하부대고 국방부검찰단의 지휘를 받는 그렇게 생각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잘못된 판단이시지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때 당시 경북청에서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부서도 다 대통령 산하에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협력하는 거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경찰청장 윤희근 글쎄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당시 경북청에서 이런저런 과정은 이미 다 알려졌지만 국방부를 통해서 그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회수를 해 가겠다 하는 이런 상호 협력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는 그 판단은 맞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 협력 요청은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청장 윤희근 상호 협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첩과 반환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자기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예민한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든 수사 규칙이라든가 기관 간에 그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르는 그런 어떤 임무와 또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이것을 다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이후에 2차 질의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근거를 대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이나 이상식 위원님이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2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장님 본질의가 마치기 전까지 제 입장을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명확히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이첩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7조(사건 이첩)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저는 근거해서 상호 협력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수심위 명단 공개는 저희 규칙에는 물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21년 4월에 이 규정을 만들 때 자체가 저희는 기준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이나 이쪽을 차용해서 이 규칙을 만들면서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여기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비공개로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은 이걸 저희는 좀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최근에 이런 수심위 규정을 만든 공수처에 보면 공수처에는 명확하게 이 심의 플러스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병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가 수심위에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경찰 수사는 다 종결을 해서 검찰 송치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저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사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도 이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자체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써,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후에 2차 질의를 통해 가지고 관련 자료라든가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또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할 차례이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질의에 1분을 더 사용하셨는데 아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정상 좀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고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역시 신정훈 위원장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내 본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사실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채 상병 관련해서 정쟁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찰 제복을 오랫동안 입었었는데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갖다가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더 존중하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우리 경찰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경찰이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똑같은 경찰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의 행태를 믿어 주는 그런 국민,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시의창구 출신 김종양 위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금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올해 12월까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저는 창원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3월 대통령님께서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발표하신 데 이어서 행안부에서도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추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례시가 4개 있습니다. 사실 그중 3개 시는 모두 경기도, 즉 수도권이고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가 창원입니다.

또한 우리 창원은 3개의 인접 도시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도시로서 다른 수도권 특례시 외는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특례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창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특례시 인구 기준 100만 명마저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그간 특례시로서의 혜택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인구마저 줄어서 특례시 지위조차 잊을 수 있다는 그런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차이와 특성을 감안해서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의해 기지정된 특례시의 지위가 상실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은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잘 살펴서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 법안에 몇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특례시다운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사소한 집행 사무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기획권한 사무의 이양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특례 지원 등의 주된 내용도 중앙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체계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당사자인 특례시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시 특별법 TF를 지금 행안부 안에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조직에 있어

서의 특수성 그다음에 4대 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그 특별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양 위원** 특례시로서의 권한 이양과 지원 강화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사항인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김종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청장님, 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에 도움이 됩니까?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국은 애초에 수사와는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 **경찰청장 윤희근** 예.

○ **위성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통해서 사실상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4월 행안부에서 ‘경찰행정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어떤 내용인지요?

○ **경찰청장 윤희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위성곤 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개선할 것을 연구용역 과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요?

○ **위성곤 위원** 예.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휘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찰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독립성과 독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찰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성곤 위원** 결국 완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겠다라고 행안부장관은 말씀하고 계신데 행안부장관께서는 2022년 6월 경찰국 신설 당시에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 **위성곤 위원** 있다라고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그게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11월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행안부장관께서는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지요,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 이태원 사고에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 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못 했다고 탓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22년 6월에 장관께서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실제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가 않고요. 헌법과 법령 체계상 모든 국가기관은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를 총괄적인 의미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 오로지 인사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는 경찰의 독립과는, 정치적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지금 행정을 이끌고 가는 거지요. 사실은 과거에 내무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었는데 그것의 독립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경찰력을 쓰겠다, 이거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것은 그야말로 연구용역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기관이 됐든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고의 연관성을 가진 국가기관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국무위원과 무관한 국가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국무위원과 연관 접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시스템상.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정부는 무능했던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가 않지요.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위성곤 위원**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한 거겠지요, 윤석열 정부에. 임성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른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사실상의 지휘권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러니까 그전 문……

○**위성곤 위원**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입증이 아니라 사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위성곤 위원** 경찰청장님, 과거에 경찰국이 생기기 전에 사실상의 지휘 감독이 있었습니까, 행안부로부터?

○**경찰청장 윤희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경찰청장 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행안부에 경찰국과 유사한 치안정책관실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기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전으로 말하면 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직접 저희를, 경찰을 지휘하고 또는 인사를 조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경찰청장 윤희근** 저는 뭐,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찰도 국가로 보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민주적 통제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의,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라는 정점을 기준으로 경찰도 당연히 그 지휘를 받고 하는 그런 조직인 거거든요.

○**위성곤 위원** 민주적 통제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경찰청장 윤희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의 어떤 큰 틀의……

○**위원장대리 윤건영** 청장님도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위성곤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성곤 위원** 그 지휘 원리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청을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경찰위원회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요, 그러나 지금 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온 과정이……

○**위성곤 위원** 과거의 역사에서……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경찰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대통령의 통치 아래 넣겠다라는 게 지금의 의도인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윤희근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정춘생 위원 교제폭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정춘생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통계가……

○정춘생 위원 7만 7000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정춘생 위원 2019년보다 약 52.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우,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장님,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정춘생 위원 얼마 전에 보도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정춘생 위원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국민청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정춘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청원동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를 들어 법률 개정 이런 내용 아닌가요?

○정춘생 위원 당연히 법률 개정이겠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래서 관련 특별법도 만들거나……

○정춘생 위원 청장님, 교제폭력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얼마 전 살인사건이었고요 보도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건은 경찰에 열한 번이나 신고했던 건수입니다, 열한 번. 열한 번이라면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한 번의 신고기간 동안 경찰은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쌍방폭행 이런 식으로 종결을 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유의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가정폭력 처벌법도 생기고 스토킹 처벌법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 교제폭력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정춘생 위원 인정하면, 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가정폭력에 더해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도 법적 제재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습니다. 그거 꼼꼼히 보시고요.

법 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처벌불원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남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법 개정을 해서 정말 또다시 이런 사건으로 살해되고 살인되고, 또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자매까지 살해된 경우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당진 사건입니다. 협박이 당사자를 떠나서 가족에게까지 협박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질들을 면밀하게 경찰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대응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그간의 경찰의 대응을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건 법의 한계입니다. 반의사불별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항상 살인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막 냄비처럼 들끓어요, 여론이. 그런데 막상 상임위에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온갖 논리로 반대를 합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제가 그 법을 발의했더니 엄청난 댓글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의 입장을 좀 알려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법 제정의 필요성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입법적인 불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생 위원 교제폭력 살인사건도, 교제폭력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 신고 있으면 가요. 가면 신체적 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안 보이면 그냥 떠납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심지어는 감금하고 감시하고, 24시간을 감시하고 가족 회사에 가서 협박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그때만 정말 이거를 개선하겠다 하지만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죽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법 개정 로드맵을 좀 경찰청에서는 마련해 주시고요.

행안부장관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을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소모적 논쟁 없이 올해 정기국회 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행안부장관님, 지금 전국에서 인구가 감소해 갖고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통합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수도권의, 특히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행정체제 개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같은 경우에는 2군·8구에서 2군·9구로 일부 기초단체의 통합과 분리가 결정되면서 95년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자치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에 관련된 것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겸단구하고 영종구, 두 곳의 새로운 자치구가 신설될 건데 신설되면 청사와 지방의회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적계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개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런 자치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면 재정 소요는 당연한데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다 보니까 마땅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예산이나 보조금을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의 경우로만 명시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법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간의 통합, 승격만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는 데는 재정 지원을, 창원, 청주 같은 데는 지원을 받지만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현행 법령상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통합되는 것이나 분리되는 것이나 똑같은 행정적인 수요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서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꼭 그런 국가의 공식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하여튼 조속히 법령 확인해 주시고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올해 국회 정기회에서는 관련 예산과 법령,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배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승강기 관련된 건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8대 안전부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년 지난 승강기는요. 그래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3년간 미룰 수 있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는 조건하에 다시 4개월의 조건부 합격을 부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3년 4개월이 주어지는 셈인데 사실 아파트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원, 부산, 인천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가 멈춰 가지고 어려워질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 특히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조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3년 4개월을 그냥 두는 것보다 일종의 이렇게 바인딩한 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3년 동안 입주민 동의를 받아 유예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수리한다든지 그리고 추가로 조건부 합격 4개월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안전부품 설치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관련 규정도 저희가 한번 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올해 6월 12일 한겨레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난 5월 28일 전체회의에서 '1950년대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다. 부수적 피해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맞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당시 다른 위원이 노근리 사건을 미군의 전쟁 범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로잡고자 전쟁 범죄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부수적 피해, 무고한 희생은 맞지만 그것이……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은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인근 경부선 철도와 터널에 피신한—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마을 주민 수백 명을 미군들이 무차별 사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하에 이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맞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부수적인 문제입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아니요, 무고한 피해는……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까지 표명한 사건이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미군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수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위원장님께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아니,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이것은 가해자 시각에서 할 수 있는 말이거나 혹은 왜곡이나 은폐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얘기로 들려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까?

더군다나 위원장님은 23년 KBS 유족 간담회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그건 사실과 다른 표현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KBS에서 2023년 10월 23일 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더군다나 ‘보상받으려고 적대세력의 희생을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신청하는 유족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사실과 다른 표현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전시……

○ 이광희 위원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의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전시에 적대세력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 이광희 위원 지금 진화위에서 나온, 진화위의 사건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 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피해 및 명예회복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판명이 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진화위 수장으로서 이런 발언 하시면 적절합니까?

그리고 지난 전체회의에 업무보고 때 안 오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폴란드 과거사 정리 및 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그래서 폴란드 과거사 문제 해결 경험과 화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는데, 맞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예,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폴란드도 전시 즉결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과거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희생과 배상, 보상에 대해서 부정의라고 하고 보상 목적으로 거짓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폴란드에서 하던가요?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위가 2023년 10월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은 인정하지만 일부를 부역자로 몰아서 진실규명 보류하고 유가족 갈라치기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시각으로 위원장님이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23년도에,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아까 진도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진도 군경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자,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이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진도 군경에 의한 희생자가 암살대원이라면서 진실규명 불능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을 나중에 서야 했다는데, 사실이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광희 위원님, 전시에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살인·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희생자 지정……

○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암살대원들이 당시 13·14세 소년들이었다는 거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서류상으로 13세~17세에 해당하는 세 분이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13·14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13세~17세 사이의 세 분이 암살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찰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록이 근거라도 나온 겁니까?

진화위는요, 진화위는 위원장님의 그런 시각 때문이라도.....

지금 진화위 1소위, 제1국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률이 특별법에 따라서 여순사건 위원회에 이첩된 사건을 포함한다고 그래도 20%대밖에 안 돼요. 내년 5월이면 정리가 돼요. 이것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위원님의.....

○ 이광희 위원 지금 건건이 계속 위원장님 그런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위원님의 우려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나머지 그것 다 하실 수 있어요, 80%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우리가 진실규명이라는 것과 처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2만여 건을 다 진실규명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그런 인식 다시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그 우려를 감안해서 활동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희 위원 먼저 최근에 며칠간 폭우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민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께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 중에서 전국의 수해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철야,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장관님, 폭우가 이렇게 한창일 때 저희들이 사망사건 5건을 이번에 보면 옹벽 붕괴, 토사 유출, 심지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침수도 있고요. 참 다양한, 저수지에 물이 넘쳐서 밑에서 실종된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런 안전사고로 지금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그저께 일어난, 경상북도 경산의 40대 여성의 농수로로 차를 운전하다가 뒷바퀴가 이렇게 끼었는데 내려와서 보다가 발을 헛디뎌서 농수로에 떨어졌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조금 다쳤을 그런 정도인데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려 가서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원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4페이지에서 인사말씀 때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의하면 6년간 농업기반시설의 이런 농로에서 사망사고가 53건이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확한 규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님께서 부처 간 이런 협업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지자체장들한테 전의를 받았습니다.

양수발전소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달희 위원** 양수발전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농로는 전국에 10만km나 됩니다.

그런데 6월 초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기초단체장을 건의는…… 6월 초에 모내기 할 때 다 이렇게 물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오는 게 장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좀 빼자고 건의를 해도 농어촌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지자체장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행안부장관님께서 이런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빼다가 장마가 지면 물을 또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장 없는 최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물 빼기에 이 두 부처 간에 그리고 지자체장 간에 실랑이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장관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확실하게 좀 체계를 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농수로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떨어져도, 비가 많이 와도 팬찮을 곳이 있고 저런 경산의 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주 위험한 곳은 특별교부세를 내리든지 해서 지자체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즉각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고요, 부처 간 협력 차원, 칸막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농림수산부가 총괄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특교세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경찰국 관련 질의에 ‘경찰하고 행정

안전부의 접점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그 역할을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민정수석실이 부활됐습니다. 그러면 경찰국 폐지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편법이고.....

○이상식 위원 아니, 뭐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까? 장관님이 조금 전에 민정수석실도 없고 접점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는 접점이 2개씩이나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래서 경찰국을 만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이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그러면 장관님 논리대로라면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국은 폐지돼야 됩니다.

윤희근 청장 아까 민주적 통제 이런 것 운운하셨는데 저는 이게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이중의 장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장관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어요. 들어 보세요. 장관님,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저는 이번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경찰을 줄 세우게 하고 길들이 게 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책임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장관님, 치안정감…… 2022년 5월 말에 경찰 고위간부 승진 대상자들 면접한 적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만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그 만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자리에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가 동석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장관님께 예스, 노로 묻겠습니다. 그때 이원모 인사비서관, 전 인사비서관 동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만날 때 매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경우에 따라서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인사비서관 동석했다 이 말이지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왜 거기에 동석합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당연히 경찰 고위직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비서관이 거기에 참석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석했던 인사비서관 이원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경찰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FC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저는 제가 지금 방금 한 주장에 책임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장관님도 만약에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 당연하지요.

○**이상식 위원** 정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당연하지요.

○**이상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곧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윤희근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상식 위원** 조금 전에 조은희 위원님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야당의 정치적 수사나 논평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정확한 위정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런 표현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현 정부에서 우리 경찰에 대해서 경찰국이라는 옥상옥의 치안정책관이라는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제가 맹형규 장관 때 치안정책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경찰국이라는 옥상옥의 통제 기구를 신설하고 거기에다가 경찰 고위간부들을 불러다가 면담까지, 면접까지 했다. 거기에다가 성남FC 사건…… 이것은 제가 나

중에 또 밝혀내겠지만 성남FC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식 위원 이것도 뭐…… 청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올곧게 경찰 생활하시고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 가는데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든 몇 가지 중에는 제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는 부분도 예를 드신 부분이 있었고요. 과거에 치안정책관이라는 그 제도가 아마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을 때……

○이해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장관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앞으로 향후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반드시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이해식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좀 앞서서 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러면 신상발언 하시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PPT를 띄워 놓고 제 이름을 말씀으로는 안 하셨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논평을 쓴 것을 띄워 놓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윤희근 청장하고 합세를 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모욕감 같은 걸 조금 느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당에서 논평을 낼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경찰이나 언론기관이나…… 특히 경찰은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은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할 때 ‘충견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군부독재 정권 때는 ‘주구’라고 불렸어요, 독재 정권의 주구. 저도 그 생각이 나서 주구라고 하려 하다가 표현을 순화시켰습니다, ‘충견’이라고. 그런데 충견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개라는 말이지요.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에서 논평을 낼 때, 예를 들면 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언론이 감시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어느 기관의, 어느 정권의 애완견이냐, 그것은 정말 삼사백 년 된 표현이지요, 서양에서 온 표현이고. 랩독(lapdog)이냐 워치독(watchdog)이냐, 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개에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고 윤희근 청장님께서 받아 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당의 논평, 경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논평을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3월 22일 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해식 위원 이게 그거지요, 야당일 때예요, 국민의힘당이 야당일 때 경찰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일치하여……’, 이게 지금 황운하 의원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평인데……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경찰이 사냥개를 자임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신상발언이라……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해식 위원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렸다.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 미친개는 봉동이 가 약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요, 이것도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인데 같은 해 1월 23일 날에는 북한에서……

○조은희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현송월을 비롯한 북한의 공연단이 왔을 때는……

○배준영 위원 아니, 마이크가 꺼졌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만하시지요.

○이해식 위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별동대냐’……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게 회의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해식 위원 왜 회의하고 상관없습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회의랑 무슨 상관……

○양부남 위원 아니, 이해당사자잖아요. 대놓고서 지금……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마이크가 꺼졌는데……

○용혜인 위원 회의와 관련 없는 건 아까 그 질의도 관련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아까 위원들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만하세요.

○조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이광희 위원 그러면 또 합니다, 이쪽에서.

○조은희 위원 2분만 주십시오, 2분.

○이광희 위원 아니, 이쪽에서 또 2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신정훈 아니, 위원님……

○조은희 위원 지금 이해식 위원 4분 50초 쓰셨습니다. 저는 2분만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뭘 4분 50초를 썼어요, 내가.

○위원장 신정훈 4분 50초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식 위원 내가 무슨 4분 50초를 썼어요. 거짓말을 좀 하지 마시고……

.....

○조은희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위원장의, 사회자의 진행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하면 또 하게 되니까……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러면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순종하겠습니다. 다음에 제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치안정감 면접을 봤다, 그때 면접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만났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했지요?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해서도 면접을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해식 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원모 비서관이 동석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매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윤희근 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때 경찰청장후보자 면접할 때 이원모 비서관 배석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배석했군요? 배석했군요.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치안정감이나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직접 면접을 본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이전에?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제가 알 수 없지요.

○이해식 위원 없습니다. 초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비서관이 배석했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고 수사에 있어서는 독립성,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어떻게 면접할 때 면접 시간에 참여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식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비서관이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식 위원 장관님, 제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장관은 인사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제도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도적인 규정이 뭐 있는…… 있지는 않겠지요. 면접을 본다, 봐야 한다, 볼 수 있다 그런 건 없겠지만……

○이해식 위원 면접을 보려면 최소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적어도 그 제청을 하려면 대상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제청권 행사하시기 전에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받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동의받을 때, 그때 동의안 통과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면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걸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이해식 위원 이유가 없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해식 위원 아니,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이해식 위원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걸 왜 숨깁니까? 제가……

○이해식 위원 숨기고 싶은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 숨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장관님,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 뜻렷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면접을 하시는 장관님은 모르겠는데 면접 대상자들은 내가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치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사

람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는 것이 당연히 줄 세우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정치적인 충성 맹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렇게 중요한 직위를……

○**이해식 위원** 아니, 장관님의 생각이 아니라 면접 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면접 대상자들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킴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요. 그게 그런 게 직권남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해식 위원** 아니, 그때 면접한 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면 서로 이력서만 보고 제청을 합니까?

○**이해식 위원** 그때도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다 지적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서류만 보고 제청을 합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 아니, 도대체 그러면……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갖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총경이 몇 명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총경이 한 600명 이상 될 겁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그 600여 명을 다 면접을 봐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5배수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총경과 치안정감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경찰 장악을 한다고 경찰국 관련해서도 엄청난 분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면접하고 인사비서관까지 배석시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오히려 이런 중요한 직위는 당연히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면 달랑……

○**이해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경력만 보고서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이해식 위원** 수사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서 아닙니까? 비서가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배석을 하고 그럼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일개 사기업에서도 평사원 채용할 때도 면접을 보는데……

○**이해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비서관이 윤희근 청장님한테 질문했습니까?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장님, 답변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따로 저한테 질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인사비서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적절한 조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면접이 됐든 미팅이 됐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규정이 있는 게 당연한 전제인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치안정감처럼 중요한 자리를 달랑 이력만 보고서 제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제가 경찰 수뇌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면접을 보지 않은 행안부장관과 인사비서관은 전부 다 그러면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사실상 패싱을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면접 보고……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 청와대 비서관을 동석시키는 게 그러면 패싱 안 한 겁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 그렇게 오래 하시고……

○**위원장 신정훈** 자,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지금 질의를 몇 분 하십니까?

○**배준영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십니다. 시간을 적당하게 써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뭐 여당 간사는 신상발언 기회도 주시지 않고……

.....

○**위원장 신정훈** 예,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할 때 아마 가장 힘들었던 분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고 또 수사를 총지휘하는 데에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아주 냉정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민간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잘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나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상민 장관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12월에 부산시에 와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권 위원** 그 말은 수도권 일극주의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지역 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시고 적어도 양대 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늘 인사말씀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극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소멸과 저출산이라는 것은 상호 악순환을 만들어 내는 고리인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저는 이것을 지역 약탈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합계출산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0.72거든요. 서울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서울은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0.55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0.69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합계출산율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수도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넘칩니다.

뭔가 하면 지방에 있는 인구들을 약탈해 온 구조라고 저는, 좀 과격한 용어입니다만, 그 구조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방소멸을 가져오게 되는 지역 간 약탈 구조가 또 다른 하나의 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최소한 수도권에 벼금가는 새로운 성장 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철학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권 위원** 부산은 물류 그리고 금융 그리고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도시로 있습니다.

물류만 보더라도 환적항으로서는 세계 2위고 컨테이너 처리항으로서는 세계 7위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지난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새로운 항공물류가 가능한 가덕도신공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성권 위원** 몇 년도에 개항을 할 예정입니까?

2029년 12월을 개항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항만물류와 항공물류가 합쳐지게 되어서 대표적인 국제적인 물류도시가 된다고 봐야 되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금융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세계 한 27위 정도이고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금융중심도시로서 국책 금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을 키워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정안에 대해서는요, 관계부처 사이 협의까지 다 완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행정안전부가 부산시하고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앙부처가 부산시를 글로벌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혁신을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법이 성안이 되었고 그래서 이 법을 여야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또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이 법안을 지금 발의해서 우리 상임위에 이제 곧 올라올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연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하는 데 조금 같이 힘을 보태 달라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질의에서 장관님께서 물가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경제부처가 아닌 골목상권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처가 바로 행안부인데 경제부처들 관료들의 이야기를 그냥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좀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이 재정지출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라거나 아니면 고환율 같은 대외 여건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인상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자영업 폐업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수 진작 없이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들을 하고 경기 회복을 통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요. 오늘 장관님의 의견은 장관님의 의견이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입법부가 이제 이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할 텐데요.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따라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폭우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감사원이 행안부 도심지 침수예방사업과 산사태 예방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용혜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 주시면, 이게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감사 결과인데요. 행안부가 지자체에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권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2022년의 반지하 참사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가보기도 하셨는데 서울 관악구도 여태까지 침수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산사태 예방 감사 결과인데요. 민가와 인접한 산사태 위험구역 8만 3000여 개소 중에 5만 5000여 개소가 산사태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이 5만 5000여 개소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이고 행안부가 관리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악 반지하 참사부터 시작해서 오송 참사나 예천 산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와 인명피해가 매년 끊기지 않고 있는데 법령상에 최소한의 예방 대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험……

○용혜인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짧게요? 예.

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용혜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침도 마련했거든요.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에서 침수 우려 주택으로 분류한 8000여의 반지하 가구가 물막이판 하나 없이 호우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도.

왜냐하면 행안부랑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주거지나 상가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원들을 평계로 세입자 안전들을 내팽개치는 결정들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안부가 방관하고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행안부 추천 중앙 전문가가 ‘민원이 있으니까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최소화하라’라는 검토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만이고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유례없는 폭우,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하고 있는 일임에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태원 참사로 탄핵심판까지 받으셨어요, 장관님. 그런데 여전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행안부의 어떤 대응들은 더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아무리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 16글자짜리 하나

마나 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장관님 말씀대로 대통령은 그런 포괄적인 지시만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관님께서 그러면 그 일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충분히 지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도요, 관련 내용들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우로 인해서 충남 논산 지하 2층 엘리베이터에서 한 시민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북 경산에서 택배 일 하던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고 익산에서는 대학생이 실종됐다고도 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을 하지요.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의 지적조차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한다면 과연 행안부가 국민들께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최대한 빠르게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의 이행계획을 마련하셔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지침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용혜인 위원** 사실 이 내용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행안부 업무보고를 열어서 점검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행안부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현안 질의, 관련된 점검들이 늦어지게 된 점,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인명피해를 올해도 막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유감을 마지막으로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행안부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종부세 폐지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보완 조치와 함께 종부세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최근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이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다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향, 전체적인 큰 틀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지방정부가 곳간이 비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채현일 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낸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화를 통해서 잘 버텨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책임자는 행안부장관이십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경찰국 관련해 가지고 이 모 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인사에 그런 관여를 하듯이 그것은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계속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협의를 했는데도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성태윤 실장님이 하신 것은 큰 틀에서의 이야기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공식적으로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대변인 설명이나 보도자료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행위를 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할 것은 아니고요. 그 큰 틀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데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채현일 위원** 종부세는 장관님 말씀대로 100% 지방정부 재원이고요. 지금 같은 균형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정확하게 말씀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7월 8일이지요, 엊그제. ‘종부세는 지방세수로 활용되므로 고려할 게 많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기재부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행안부장관께서 이 멘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기재부장관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채현일 위원** 주무장관이 저는 행안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장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주무 책임자로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방재정의 근원적인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을 그렇게 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현일 위원** 정률교부세 있지요, 지방교부세. 이게 지금 19.24%, 2006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관련 법안도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재정부처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교부세율을 조금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과감하게 올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서 사전 예산 배분 조정 권한이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기재부와 논의한 적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다.

○**채현일 위원** 한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관련 입법을 정부입법으로 7월 중에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입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마 그 법안이 오늘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요.

○**채현일 위원** 정부입법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의원입법이요.

○**채현일 위원** 정부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부처 간의 동의를 받고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야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야당에서도 인구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제기돼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정무장관 신설 관련돼 가지고 정무장관 신설이 되면 지금의 어떤 정치가 꽉 막히고, 이런 정치가 이렇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무수석도 대통령실에서 임명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의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정무장관 신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국회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대화와 협상, 타협 그런 것을 기대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방금,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각 시군의 세수가 얼마나 감소됐나 제가 모든 시군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한 1조가량 되지요.

○한병도 위원 예, 1조가량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군 단위도 거의 120억 원가량, 저희 김제시 익산시 이런 데도 140억 원가량 이상의 세수가 현재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는데 이런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여러 방안을 지금 저희 행안부 자체 내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고요……

○한병도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중요한 세수 변화인데 이것 논의를 하면 적어도 정책실이나 아니면 기재부, 행안부, 기존의……

예를 들어서 행안부와 정무수석실이 같은 업무를 한다면 수석실에서 이런 공동 협의 논의는 아직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한병도 위원 오케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궁금하시면 시간상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한병도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 유념하고, 특히 행안부하고 정무수석실에서 이것을 강력히 쟁겨야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재부나 정책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요즘, 오늘 계속 논란이 됐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경북청의 수사 결과와 별도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골프모임에 참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7~8월경에 임 사단장 구명을 했다’ 취지의 발언도 확보했다고 하고, 아무튼 임성근 사단장 관련된 논란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증거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띠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여러 사건 때 현안에 대한 서로 간의 주의 주장보다도 이 타임 라인, 저희 운영 위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 날 11시경에 VIP 격노설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부터 보시면 8월 2일 11시 50분부터 8시 15분까지 이 내용을 저번의 운영위 때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꼭 이것만 가지고 논의한 게 아니다. 다른 외교 현안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타임 라인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시 50분에 이첩이 되고 12시 7분에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하고 14분에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공직비서관 통화하고 그다음에 43분에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 또다시 통화하고, 45분에 보직 해임하고 57분에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 또 통화하고, 1시 25분에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대통령께서 통화하고,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합니다. 그다음에 12시 40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파견된 경찰이요—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통화합니다. 또 12시 40분경 국가수사본부 총경이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군이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사실을 전달을 하지요.

1시 51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과 통화합니다. 7시 20분 국방부, 경북청에 해병대조사단 사건기록 회수합니다. 그리고 8시 15분에 해병대수사단의 A수사관이 경북청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타임 라인을 보시면 이후에 이첩이 되고 경북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오늘 많은 논란이 있지만 8월 2일 11시 50분부터 밤 8시 15분까지 일련의 증거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이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지속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또 그 근거로서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12조 4항을 들고 있는데 스스로도 이 문제가,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진행한다 하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애매모호하니 이게 근거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을 근거로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것을 근거로?

○경찰청장 윤희근 예, 거기에 보면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저희가 이 규칙을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규칙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방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경찰청은 지금까지 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법원 판결을 받은 적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 규칙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법원 판결이요?

○위원장 신정훈 법원 판결이, 법원 판결 내용 내가 읽어 드릴게요.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원의 판결들을 아마 경찰청장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숨기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신정훈 이 판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그 판결은 사실 저는 지금 막 언론 보도를 보고 저도 인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신정훈 인지를 이제 하셨다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대구지법의 판결과 조금 다른 내용의 판결이 춘천지법에서 나온 것을 지금 언론 보도, 한겨레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위원장 신정훈 청장님,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몰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몰랐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장이 그 정도예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서 수차례 위원들의 요구를 받으면서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 난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제 알았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아까 언론 보도 났을 때 그때 우리 참모가 보고를 해 줘서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모가 누구입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사기획조정관, 이 문제 총괄하시지요, 경찰청에서?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것 보고 안 했습니까? 설마 위원들의.....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죄송합니다.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 경찰청에서 놓쳤는지 보니까 주로 우리 직원들이 '엘박스(Lbox)'라는 앱을,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판례가 검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보공개 거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

대구지법 판례라든가 판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원주 강원청 판례도.....

○위원장 신정훈 그만 중단해 주세요.

지금 그 주장 들으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획조정관이 이 문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 그것도 최근 판결입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판결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1심과 2심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저희……

○위원장 신정훈 지금 보면 유독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라든가 경찰청의 태도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지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이런 법원의 판결조차 숨겨 가면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계속적으로, 그게 사건 진실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사건 진실의 중요성보다는 지금은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위원장 신정훈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아니요,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경북청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보직에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1년도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경찰 책임수사 체제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지탱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고 지금 위원들이 공개가 되면 사실상 그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 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민적 의구심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채 해병 그리고 정말 진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채 해병의 가족, 국민, 이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자세라든가 지금까지, 아까 전에 한 병도 위원님이 타임 스케줄 쭉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누구라도, 국민들은 판단할 거예요. 오로지 이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에 불과해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저는 그 경북청 사건하고……

○위원장 신정훈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예.

○위원장 신정훈 마찬가지로 이 판결에 근거하고 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근거해서 이 관련은, 서면으로 제출한 이 자료 다시 작성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더불어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지금 현재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심의 규칙과 함께 그리고 그 당시의 지침에 해당하는 경찰 수사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외부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리한다거나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세요.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원 판결조차도 숨겨 가면서 까지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기어코 감춰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먼저 한병도 위원님하고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 장관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인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 수입만큼 종부세에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세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관님,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경찰청장을 할 때 면접입니까, 면담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면담이지요.

○**조승환 위원** 면담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면담이지요.

○**조승환 위원** 지금 경찰청장을 몇 사람 추천하시지요, 대통령님한테 임명 제청하시는 숫자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보통 단수로 합니다.

○**조승환 위원** 단수, 1명만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1명만 하시는데 경찰 인원이 한 15만 명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4만 명 정도 됩니다.

○**조승환 위원** 14만 명 정도 되지요.

그리고 특히 장관님 같으신 경우에는 주로 법조 생활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어떤 아는 그게 좀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때 보면 심적 부담을 엄청 느끼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자기 본인이 제대로 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경찰청장을 최소한 만나는 봐야 됩니다. 만나는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 길들이기다, 줄 세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가 줄 세우기だ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 잠시만 말씀 다시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경찰청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정감 중에서만 제청이 가능합니다. 치안정감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 그분들의 경력과 이른바 세평입니다. 그런데 세평을 받아 보면 찬반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고. 그 세평만 가지고서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면접이 됐든 면담이 됐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들한테 채 해병에 대한 수사결과를 수사팀 결과만 가지고 발표하는 게 국민들한테 수사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더 높이는 길입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하는 게 더 높이는 길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가 맞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애초에 21년 4월에 국가수사본부 체제가 만들어질 때 수심위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심위를 연 겁니다.

○**조승환 위원** 경북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지요.

이 인원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원 구성이 마치 뭔가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갖게 되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10명의 법조인, 10명의 법학자에 대해서 다 전화를 걸었다, 그중에서 되는 사람이 아홉 사람이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2명을 선택한 기준은 뭐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2명은 사회 인사 중에서 2명을 했고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1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 기준.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나머지는 내부 위원들도 10명, 수사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 출신이 또 6명 있어서……

○**조승환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6명밖에 없었네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사회 인사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무슨 인원의 구성과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걱정이 듭니다.

그다음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월권행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월권이라는 게 법률적 행위도 아닐 뿐더러 군 행정이나 군기에 대한 권한은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을 했다 또는 지도했다, 조언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과실치사나 직권남용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경북경찰청장님 나와 보시지요.

오후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PPT 하나 올려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에 7월 9일 날 JTBC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진술서 띄워 주시지요.

‘진술서에 담긴 임성근의 지시’라고 있는데 JTBC에 보도된 저 진술서 혹시 경북청장님 알고 계세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걸 못 봤다고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윤건영 위원** 이 보도에 나온 해당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하면요.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경북청장님?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본인의 입장에서는……

○**윤건영 위원**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 해당 진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것을 빨리빨리 답을 못 하십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만 제가 여쭤 봤는데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사실이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 내용이 저 진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경북청장님, 저 진술서에 제가 방금 읽었던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국회 상임위장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경북경찰청장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옆에 보조자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사부장이거든요.

○**윤건영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직접 한번 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건영 위원** 예, 수사부장 이야기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하세요. 저 진술서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저 진술서 저도 처음 보기는 하지만 저게 아마 해병대 조사단에서 수사를……

○**윤건영 위원** 해병대 조사단이 아니고요, 국방부 조사단입니다.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예, 군이 이첩해 올 때 온 진술서 같은데요. 저것을……

○**윤건영 위원** 당연히 경북경찰청에 저 자료가 있겠지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예, 저희가 저것을 보고……

○윤건영 위원 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저 서류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 수사팀에서……

○윤건영 위원 저 서류 안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윤건영 위원 아니, 본인이 아니라요, 부장님.

○위원장 신정훈 묻는 말에 그대로 답변하세요.

○윤건영 위원 묻는 것에 답을 하세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예.

○윤건영 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예, 맞습니다. 본인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있지요? 들어가세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그래서 저희가……

○윤건영 위원 들어가세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들어가세요.

잠깐만 시간 좀 끊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말하는 게 제가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저 경북 수사부장이라는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빼 주시고요.

○위원장 신정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건영 위원 아니요. 위원님,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김종양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

○윤건영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김종양 위원님.

○조은희 위원 주의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윤건영 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올바른 겁니까?

○위원장 신정훈 지금 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답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행상 무슨 잘못이 있는가요?

○김종양 위원 진행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수사부장이 저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윤건영 위원 아니, 김종양 위원님 발언하실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는 답변석에 와 계신 분들은 위원의 질의가, 위원이 답변을 자른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이 분명하게 질문한 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까 손해 봤으니까 시간 좀 늘려 주시고요.

경북경찰청장님, 조금 전의 답변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방금 번복을 하셨어요. 그런 태도로 볼 때 사단장의 지시가 있다라는 핵심 증언을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그래서 경북경찰청의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경북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는 8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수사기록 회수, 자료 회수 관련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어쨌든 그 사항이 끝난 이후에 저는 알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추후에 보고도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윤건영 위원 그 과정 중에서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자료 회수 과정 중에서?

○경찰청장 윤희근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자료 회수와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공직기강의 박 모 경정이 국수본의 이 모 총경한테 연락을 하고요. 이 모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노규호 경무관한테 연락을 해요. 즉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요. 소위가 중위한테 하고 중위가 대위한테 하는 형국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요.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 행안부 경찰국장님 나와 주세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경찰국장입니다.

○윤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국장님,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셨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경찰 상황 총괄하는 업무 맡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그 일했으니까 다 알지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수본으로 연락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 파악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그 당시에 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파악 못 했으면 문제 심각한 것 아니에요?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 상황실에서 그런 업무를 파악 못 하고 그런 것 청장한테 보고 못 했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상황실이 파악을 못 하고 경찰청장도 그것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보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금은 그게 그런 사안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 안 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이 사안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움직여서 연락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당연히 파악했을 테고 상황실에서 본청으로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제가 확인된 것 하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 불명확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건 윤건영 위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예.

○**경찰청장 윤희근** 우선 윤 모 소령과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을 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서류는 국방부 쪽에서 작성한 게 맞고요.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그 윤 모 소령을 조사했을 때는 국방부 조사에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임 사단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조사에서는 좀 다른 진술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제 말의 요지는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임 사단장과 다른 요지의 진술들이 술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제가 오후에 질의했던 대질신문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했더니 대질신문도 안 하셨더라고요. 맞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소령과 사단장의 진술이 다르다고 그것을 다 대질신문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요.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수사기관이 판단하는데 애초에 소령의 진술은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국방부 조사 때……

○**윤건영 위원** 그러면 대질신문 당연히 해야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단장 그런 지시한 사실 없습니다’ 하고.

○**윤건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 신정훈** 이해하겠습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진술했는데 추후에 진술을 바꿨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질조사의 필요성을……

○**위원장 신정훈** 그래서 국민들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엄중한 국방부 수사단에는 그렇게 진술했던 당사자가 추후에 진술을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실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장님께서 자꾸 오히려 더 의혹을 지금 키우시는 것 같아서 저

는 경찰청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틀린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틀린 이야기했어요?

○**배준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그 진술이 틀릴 것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진행 과정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청장의 답변의 모순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 인정했잖아요. 진술이 바뀌었어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진술이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바뀐 진술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신정훈** 제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잖아요. 진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배준영 위원**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게 불편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진실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아니, 지금 애초에……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서 말씀을 하도록 하든지, 지금 왔다 갔다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 영상 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 질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 1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경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었다고 본인이 논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료 위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특정 위원의 발언만을 가지고 문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한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언론이……

○**위원장 신정훈** 그 정도로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며 역대급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두둔한다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SNS상에 ‘기례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 줘도 기례기들은 분노 조절기능을 상실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드는 수사 내놓지 않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을 충견이라고 하고……

끄셨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1분 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드는 수사 내놓지 않았다고 경찰을 충견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검찰을 탄핵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겨냥한 언론보도에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부디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윤 소령은 7여단장입니다.

경찰청장님……

○윤건영 위원 여단장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윤 소령은 대대장입니다.

○윤건영 위원 대대장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윤 소령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7여단의 참모라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7여단의 참모인데, 그러면 7여단의 참모가 쓴 진술서가 경찰에 가서 수사 결과 내용이 번복됐다고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몰아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의견은 어떤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윤 모 소령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국방부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본인이 그때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쪽에서 한 진술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하는데 그것을 참고한 것이지요.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스 채용 비리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해 권익위가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27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의 셀프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이 딱 4건이었습니다, 4건요. 딱 4명을 수사 의뢰하셨고 징계의결 요구도 4명만 내렸습니다. 그나마 국회와 언론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떠밀리듯 한 거지요. 권익위·감사원 결과와 너무나 다른데 자체 감사 결과 제대로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자체 감사 결과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 결과나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중간, 그러니까 4월 달에 발표한 감사원의 중간발표 결과가 더 많은 비리를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은희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에 따라서 추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 개시 통보가 진행되면 그 이외의 징계절차는 전부 정지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총장님,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빠 찬스를 제공한 선관위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징계 없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도 정상 근무 중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계속되고 있지요.

선관위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감사원으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사 개시 통보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중간발표 결과에 의하면 28명 수사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십 명인데, 수사 중이고 감사 중인 직원이 수십 명인데 직무해제된 인원이 있습니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바로 조치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상 감사 개시 통보가 되면 징계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통상 중앙부처는 검찰이 수사 개시 통보하면 직위해제하는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그런데 채용비리 사건은 비리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직위해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징계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적은 인원에서 직위해제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직무에서는 배제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무급휴직 상태로 놔두라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제식구 감싼다고 지금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다음 질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김광동 위원장님, 응시원서 찾으셨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확인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보셨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봤습니다.

○ 김성희 위원 진도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 있나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대법원 무죄 판결된 진도 관련 사건 당사자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 당사자의 아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언급했던 내용은 소개서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근거에 의해서 조사되어야 되고 진상규명에 소명을 표명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

○ 김성희 위원 제가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아버지도 간첩일 거다라는 짐작을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응시원서에 썼는데 그걸 그대로 읽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적격이다’ 그리고 뽑으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지금 하시는 겁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 김성희 위원 어지러워지는데요. 다시 내용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보았습니다.

○ 김성희 위원 어차피 내용을 안 보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위원장님, 내용을 좀 주시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이번에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해……

○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시면 읽고 나서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다시 대화를 할 테니까 세 번째 질의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다른 얘기 좀 할게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김성희 위원님, 잠시만……

○ 김성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하시고요.

경찰청장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아니요, 이것은 공개되기 어려운 자료에 해당……

○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막아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제가 그 문제는 진행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위원 경찰청장님,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게 항공안전법 위반이라서 범죄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찰청장 윤희근 항공안전법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항공안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희 위원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두 가지 전제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항공안전법 제129조 2항에 따라서 무인자유기구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1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지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러면 구성요소로서—청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무인자유기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2kg 이상의 물건을 단 기체의 성질·온도, 그러니까 수소를 넣든지 헬륨을 넣든지 아니면 뜨겁게 열기구를 하든지 온도 차를 이용한 비행장치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성회 위원 그러면 이런 기구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리고 2kg을 넘어야 되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파란색 기구 밑의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11~12kg이라고 자기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행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시지요, 청장님 보시기에도?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일종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성회 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관련된 사안을. 최근 2개월 내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들, 자유북한운동연합, 겨레일통일연대, 국민계몽운동본부에 관련돼서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을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비행허가 신청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딱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조항을 전부 다, 그러니까 기구로서는 충족하고 국토부장관한테 신고를 안 했으니 저는 위법행위로 보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미 질의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답변 언제까지 받으시기로 됐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곧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회 위원 빨리 답변 받아 주시고. 이것이 만약 국토부에 의해서 무인자유기구라고 인정이, 즉 비행기구라고 인정되면 경찰에서 이 단체들은 단속하실 수 있지요? 쳐벌하실 수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도 법에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회 위원 수사 대상이 돼서 국민들 안전을 지켜 달라라는 이런 호소에 경찰청장께서 응해…… 물론 수사는 자율권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경찰청장께서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구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일단 그 회신이 오면 저희 자체 논의를 해서 어떤 정도의 메시지를 저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다음번 회의 때 꼭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청장께 꼭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위원 참, 의사진행…… 자료 관련돼서 좀 확인을……

○위원장 신정훈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예.

○ 위원장 신정훈 관련해서 자료, 이 시간 3차 질의 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위원장님, 이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보호의 보호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제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어떤 측면에서 개인 신상 보호이지요? 응시하는 과정에서 진술된 기록과 자료인데, 이게 하나의 공적 자료인데 어떻게 그게 개인 신상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을 내고 있는데 그 규정에는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보보호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거나 또 다른 데……

○ 위원장 신정훈 공개될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관장으로서 임의적으로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개인이 제출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그러나 그 당시 응시원서에서 제출된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보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채용 근거를 저희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예, 저희도 알아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지금 당사자는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 이 자리에서 증언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광동 위원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주의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출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김광동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님과 경북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사 많이 하셨지요?

○ 경상북도 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 양부남 위원 우리 청장님은?

○ 경찰청장 윤희근 저는 수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 양부남 위원 곧 퇴직하시니까 수사 많이 하셨지요?

○ 경찰청장 윤희근 예?

○**양부남 위원** 수사 많이 하셨어?

○**경찰청장 윤희근** 저는 사실 수사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 그래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양부남 위원** 조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윤 모 소령의 진술서 전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은 물론 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부장도 즉시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미 이 수사가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꽤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이 기록의 몇 쪽에 어떠한 조서가 있는가까지 머리에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임 사단장의 지시가 있던 걸로 생각했다는 조서가, 진술서가 국방부 조사단에서 작성됐다 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찌르면 출출 나와야 될 상황인데 이걸 즉답을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고 이 수사팀이 뭔가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무혐의 송치를 했는데 제가 법리적으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직권남용죄입니다. 작전통제권이 임 사단장에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없었지만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 사단장은 사실상 지휘를 했습니다. 사실상 권한을 행사했고 법리상 이 권한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월권행위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실상 권한이 남용됐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월권행위로 일단 이걸 쳐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죄에 있어서도 사실상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걸 내가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50사단의 작전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것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 가는 면밀히 따져 봤어야 합니다. 해병,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해병입니다. 해병대는 이러한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중 수색을 함에 있어서 구명조끼도 끼지 않고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으면서까지 바둑판 수색을 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지만. 그렇다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서 남용했다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한번 PPT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 보면 경찰에서 거의 인정을 했어요. 사실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사실상 의무가 있다, 아주 잘했습니다. 조리상·사실상 의무가 있습니다. 대전제의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와서 또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끼지 않았다는.....

사실 이 경찰이 아주 수사 잘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가다가 또 이상하게 과실이 없다로 빠집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명조끼만 끼었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도

끼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왜? 해병 티셔츠가 가려지니까. 해병 티셔츠가 가려지면 자기의 어떤 활동이 적어지니까 이랬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고요.

다음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이 언론에서 제기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경찰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된다고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도출이 또 이상해요. 그것과 11포대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설시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군대라는 사회를 봅시다. 11포대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를 했어요. 경찰은 이걸 11포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오해를 해 가지고 이 지시를 했다라고, 그래서 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대장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문화가 뭔지 자기의 경험과 경륜이 있고 또 군대라는 특수사회에 있어서 의사구조의 전달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위에서 사단장이 하품하면 밑에는 뭐라고 하지요? 태풍 분다고 그립니다. 이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단장의 언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로 볼 일이 아니고 이건 무리한 지시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맞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이 사건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이기 때문에 헛소리한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제 말을 꼭 귀담아들어서 다음 수사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경북 수사부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앞서 윤 소령의 진술서에.....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무관입니다.

○김상욱 위원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윤 소령의 진술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사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진술 내용이 증거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이첩되어 올 때 같이 이첩되어 온 서류 중의 하나고요. 저희 수사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때는 본

인 생각을 그대로 진술했는데 사단장이 직접적으로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사실은 없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진술 번복이 아니라 그렇게 진술이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김상욱 위원 아, 진술 번복이 아니라?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저희가 보기에는 진술 번복이 아니라 불명확한 것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적혀 있어서 불러서 정확하게 이게 맞나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사단장이 명확하게 지시를 한 건 없다 이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단장하고 대질조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 수사팀에서.

○김상욱 위원 진술서는 수사기록에 편철은 돼 있는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최초 해병대 수사단에서 저희한테 이첩했다가, 이첩해 온 걸 저희가 회수 협조했을 때 그 서류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저희한테 이첩해 올 때 모두 다 사본으로 해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사에 다 참고를 하고 기록에 다 붙어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것은 수면 수색이었다 그리고 수중 수색에 대해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하거나 인지한 것이 없다 이것이 수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중 수색 사진이 메시지 전달되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그건 포3대대 9중대인데요. 한 9시 30분경에 1사단장이 그때 순시를 하면서 늦게 투입했다고 질책했다고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게 포3대대 9중대인데 사단장이 다른 데로 현장 순시를 가고 난 이후에 그 3대대 9중대에서 일부 가 무릎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중 수색을 한 거고 그 사진이 언론에 찍혀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으로 1시간가량 수중 수색을 할 때 찍힌 사진이고 그 이후에는 수중 수색을 한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수사부장 김형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게 아니라 강조하고 꼼꼼히 하라는 지시이지, 기존의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추가한 게 없음을 저희가 수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김상욱 위원 예,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잠시만 멈춰 주시면…… 제가 경찰청장님께도 추가질의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상욱 위원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선 주질문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11대대장의 임의 지시 여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대대장이 임의로 지시해서, 임의 지시라는 것이 결국 상부의 지시나 또는 그런 것 없이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취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지휘하시고 또 가장 수사기록을 많이 보셨고 한 경찰 관계자분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요.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지요, 여론이나 또는 감정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실이 또 어두워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님께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면밀하게 그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사기록이 다 밝혀지더라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면밀하게 엄정하게 수사되었다고 자부하실 수 있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청 수사팀의 수사 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김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하고 경북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민주당은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자체 규정을 들어서 법원 판결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수사기획조정관이 아까 발언하신 것 들으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박정현 위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법원 판결이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현 위원 그게 아니고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판결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원주청인가요? 강원청이군요. 강원청에서 항고를 지금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원청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으로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강원청이 지금 법무부에 상고 포기를 지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황까지 나왔는데 경찰청장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경찰청장께서 다른 기관과도 협력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막상 자기 청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사 보고를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제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변명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청장님, 수사심의위원회의 임성근 사단장 불기소 의견이 다수라고 지난번에 말씀

하셨지요? 아까 대답하셨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임성근 사단장 핸드폰은 압수가 됐나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사단장 핸드폰은 나중에 공수처에서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공수처야 압수를 한 걸 거고 작년부터 11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요 피의자잖아요. 핵심 피의자인데 핵심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저희는 임의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 통화내역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의 제출을 받아 가지고 압수를 해서 내용물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을 다 하셨어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다 하고도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을 다 하신 건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박정현 위원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자꾸 수사와 관련된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박정현 위원 어차피 다 공개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그 수사 서류를……

○박정현 위원 저 묻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드릴 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박정현 위원 이 핸드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임의 제출받은 내용들 어떻게 했는지는 서류를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제출에 대한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장님, 제가 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들이……

○박정현 위원 아니, 안 물었습니다. 제 시간이 지금, 저 질문할 시간이니까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수사 서류를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수사 서류 다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서류를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원래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가기로 한 건데 갑자기 수중 수색으로 바뀌면서 우리 젊은 해병이 사망한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전환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박정현 위원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5일 날 경북 재난상황실로부터 호우 피해 복구 지원요청을 받았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일 날 지휘관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7월 17일 날 10시 12분 경북도 지원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맞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박정현 위원 해병대 7여단장에게 11시쯤 ‘곧바로 수색 지역으로 출동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7월 17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네요. 공교롭지요?

그리고 7월 18일 해병대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인 포병 11대대장과 포병 7대대장 등에게 실종자 수색이라고 임무를 하달했습니다. 임무가 바뀐 거지요, 지금? 호우 피해에서 바뀐 거지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예, 그것은 소방하고 수색 지침, 방법 이런 것을 정해서……

○박정현 위원 실종자 수색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철문 그게 그때 소방하고 정해 가지고 처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의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하들로 하여금 수중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지휘관이…… 그것도 최종 지휘관이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 중에 경찰청장님께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수사서류 일체를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고요.

우선은 ‘핵심 피의자 임성근에게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임의제 출받아서 수사를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박정현 위원님

께서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임의제출된 내용을 행정적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일단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련해서 임의제출된 휴대폰에 대한 암수수색…… 임의제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작정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일단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총 여섯 분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어떤 내용이신가요?

○위성곤 위원 질의할 겁니다, 추가질의.

○위원장 신정훈 추가질의요?

우선 간사 간 합의가 있어서 여섯 분으로 제한했는데요. 마무리 짓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PPT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인사처장님, 저기 제가 경찰하고 검사 직급 비교해 놨는데요. 지금 검사님들, 검사들 직급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저 숫자 인사혁신처에서 나오신 자료를 제가 저렇게 했는데 저 숫자는 맞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검사는 직급이 총 두 단계이지 않습니까, 경찰총장하고 검사.

○이상식 위원 그것은 자기를 내부 직급이고 여기에……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관련 직급은 보수를 상호 비교하는, 상응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검사는 직급이 없습니까? 검사장은 그러면 급수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직위명에 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 직급은 없습니까? 보수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경찰청장은 직급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검사들은 직급이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사처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왔거든요. 차관급 죽 해 가지고 51명이다 이렇게 온 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보수를, 상당한 보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공무원 세계에서는 보수로 전부 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러니까 그 직급이 있다는 거는 아닌 거고요. 보수 상당한 것을 비교할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 직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 보면 장관급, 차관급, 1급, 2급 죽 이렇게 써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렇게 딱 적시를 정확하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우리 경찰…… 자꾸 지금 제가 ‘우리 경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에는 치안총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직제표에 의하면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51명이나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군의 직급은 조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령들이 2급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서기관까지 내려가고 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검사들의 직급은 너무 상향돼 있고 거기에 반해서, 뭐 제가 자꾸 경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마는 경찰이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직군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처장님, 공무원의 사기나 이런 것은 저런 직급체계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하고도 중요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애화도 많은데, 다른 사례도 있는데 지금 검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주신 말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저는 1분만 쓰고 나머지는 위성곤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소령 진술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진술의 신빙성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직후에 했던 진술과 채 상병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한 진술 중에서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경북청 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윤 소령은 진술을 변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윤 소령에게 지시를 했냐 안 했냐로 조사하면 당연히 안 했다라고밖에 답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고 나라가 난리 났는데요.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지요.

윤 소령의 첫 진술의 핵심은 당시 사단장의 지시의 취지가 수중 수색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즉 물에 들어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내려가라’, 가슴장화 등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진술을 변복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2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조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4월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조직개편에 관해서 응답이 만족한다가 2.9% 그리고 불만족이 88.2%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인력 감소’, ‘정신적 업무 부담이 크다’ 80.2%, ‘현장 업무량이 늘었다’ 11%. 왜냐하면 총량적으로 경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동순찰대 인원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전체 평균의, 13만 2000명 중에 2660명 정도, 2% 정도가 순찰대로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은 1.26%인데 제주청인 경우에는 4.57% 그러니까 전체 인력의, 총 인력의 4.5%가 기동순찰대로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성곤 위원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관광청을 제주에 신설하겠다 공약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기억이 날 듯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기억을 못 하시면 됩니까, 장관님? 제주에 약속한 게 이거랑 제2공항 추진 두 가지밖에 없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약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위성곤 위원 공약을 좀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약하신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기동순찰대를 왜 만들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위성곤 위원 너무 길어서요,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너무 길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거는 정말 저희 고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과 대응이 다 중요합니다. 범죄 예방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한 2~3년에 걸쳐서 좀 약화된 개념이 있거든요. 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 끝에 내근 인력을 대거 빼내서 만든 조직이고요. 현장 지구대, 파출소 인력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인력을 만들어 냈으면 본인들한테 주면 좋겠다……

○**위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 지·파출소 인력이 줄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인사발령을 휴직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휴직자들을 지·파출소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줄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 위원님, 그냥 결론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힘든 인력 운용이지만 정말 국민들 시각에서 만든 조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왜 필요했는지를 입증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성실히 임해 주신 이상민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중 질문 받으신 경찰청장님과 또 대구에서 올라오신 경북청장님께도 또 경찰 관계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또 한 점 의혹 없는 사건 규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요. 윤희근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제 임기 완주를 한 달 앞두고 계신데요. 곧 신임 청장 인선도 있을 예정입니다. 후임 청장이 꼭 챙겨야 할 과제나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어떤 말씀을 후임에게 전해 주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충분히 역량과 성품이 훌륭한 후임 청장이 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부임하셨는데요. 지난 2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요즘 AI 기술 발달에서 파생된 신종 범죄들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 친구들의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학습시켜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충격적인 건 10대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또래 여학생들 열굴을 합성하고 유포해서 판매까지 한 사건이 성행합니다. 온라인 검색만으로 해도 너무나 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범행 수법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과 사칭, 가짜뉴스 등 새로운 유

형의 범죄들이 미래에는 더 범람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조직이 차질 없이 이러한 고도화된 범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때 다중사기 피해방지법이라는 것이 발의됐다가 그냥 폐기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2대 우리 행안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김광동 위원장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면담 요구하면서 놓쳤는데 그분들 주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면담 성사와 사퇴 요구였습니다.

○김성희 위원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사건 처리 제대로 공정하게 하고 계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적은 조사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2만여 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김성희 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님은 위원장님이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녹취 계속 보시지요.

‘최소한 사례를 3개 들었으면 북한이 한 만행 3개 정도는 쓰자는 거지’, ‘제가—바로 그 황인수 국장입니다—이런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 숫자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라고 일국의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국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개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작해서 개수를 양쪽으로 맞추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균형을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접수된 사건을 사건대로 해결하면 되지 북한 것 3개, 남한 것 3개 맞추는 게 맞아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다만 균형을 맞춰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김성희 위원** 아니, 균형을 맞추는 건 너무…… 개개인에서, 개별 건에 대해서 맞추는 건 당연한데 북한 만행이랑 남한 만행을 3개씩 맞추라는 요구를 지금 국장이 80명을 모아 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건데 문제의식 안 느껴지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 정권의 군과 경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민간인 학살 범죄를 수사하는 게 여기 진화위의 임무 맞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앞에도 맞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두 가지를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라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 국장 생각하고 똑같으시네요. 3개 하면 3개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네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숫자적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대한민국 대법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했던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한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이런 황 국장 행태, 이것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답변을 주셔야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앞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위원장님도 그렇고 황 국장도 그렇고 저렇게 하라는 피해자들은 안 하고 왜 간첩하고 부역자를 찾아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인 광복 후 한국전쟁 즈음의 군경 학살을 최소화하고 감추고 싶은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 아니라 이승만 무오류이시다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특정 이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역사 앞에서 진실 앞에서 정말 화해를 만들어 내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그게 법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대로 안 하고 있는 황 국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도 다음 번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검토하겠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경찰에 봉직하시느라.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만족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은 둘로 나눠집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있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합니다. 온 동네 소문 다 났습니다, 이 사람 도둑놈이고 죄인이라고. 그런데 정작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죄가 안 돼서 불송치 결정하거나 죄가 된다고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당사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굉장히 침해한 것입니다. 경찰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 청탁 수사, 무리한 법리 적용, 무리한 증거 판단을 함으로써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권을 잘 받아서 수행 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이 인자는, 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자들이 과연 적정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인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가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떠나시면서 이런 평가 인자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 하나 만들고 가시면 경찰의 발전과 대한민국 수사의 발전, 국민의 인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 경찰을 포함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들의 다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KICS 고도화 시스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일단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실제 수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양부남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수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수사를 하는 사람도 수사를 받는 사람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내 이웃이라는 것을, 내 부모·형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수사를 받는 사람의 진압군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 편성 안 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지역화폐 예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편성 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상민 장관님, 국회하고 겨뤄 보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2023년에도 2024년에도 편성 안 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한 거잖아요. 2년 연속 이렇게 하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은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그것을 국가 지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잠깐만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만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할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께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상당수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 204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약 84%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이 절반 정도로 출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것을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어떤 정책은 재정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요. 그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효과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박정현 위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것을,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어도 똑같이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치사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역사무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지요.

○**박정현 위원** 바람직하니까 못 하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석하시기 나름입니다.

○**박정현 위원** 말장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장관님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사무인 소방의 경우는 재원의 90% 이상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사실상…… 아니, 소방업무 자체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다만……

○**박정현 위원** 이미 올라왔잖아요, 국가사무로 바뀌었고. 왜냐하면 소방의 특성 때문에 국가사무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주무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소방의 특성이 아니고요 소방 쪽에서 그렇게 많이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소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업무 자체의 본질은 지방사무입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 자체의 본질이 지방사무가 아닌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래서 소방에 대한 저희 감독의 모든 총괄 책임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 자체의 본질이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확인만 하나 할게요. 여당 간사님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한병도 위원님, 1분 내에……

○**한병도 위원** 30초면 됩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한병도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충청과 익산, 군산 또 완주, 피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검토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한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요.

애초에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서 안 되는 상황이라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에 2022년도의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있었던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다’라고 해서 2022년도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24년도에 그 요청을 또다시 했는데 여전히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다. 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것 별 대단한 자료도 아니고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부처의 의견을 받았던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거여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관련해서 위원회가 자료요청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저도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에 지방행정의 미래 발전방향, 행정체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지역 공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극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들을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자료요청으로 제가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지방소멸의 지표를 보면 그야말로 사라지고 있다 할 정도로 가파른 지방소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표가 시군 단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읍면동 단위로 보면 그 실감도가 훨씬 더 세집니다. 1000명 미만의 읍면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율이 10% 이상 되는 행정 단위가 거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고령화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지방소멸지수를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자료화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는, 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권이 시를 특례로 만들면서 그 이후에 여건이 안 맞아서 도농 통합시라는 형식으로 다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읍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그 지역의 소멸이 오히려 더 가속화됐다는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남 나주에 있는 영산포읍 같은 경우가 시 지역으로 분리됐다 다시 군 지역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농촌 지역으로 분류됐던 읍 지역이 도시

지역의 행정체제인 동 지역으로 바뀌면서 다시 환원되지 못하고 소멸지수가 오히려 행정의 어떤 체계개편 과정에서 더 악화됐다,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도농 통합시의 읍 지역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지표도 함께 살펴서 그 해결방안까지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 스토리를 잘 찾아 가지고요. 방금 주신 말씀 유념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성희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그리고 용혜인 위원님 그리고 정춘생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고 또 저를 포함해서 이상식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경찰청장,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과 회의를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다음 주 화요일인 16일 오후 2시에 열어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차관보 김민재

대변인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정책기획관 정창성
조직국장 김정기
경찰국장 박현수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대통령기록관
관장 이동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주재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김장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인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직무대행 김석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목영만
한국섬진홍원
경영기획실장 양영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강성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양의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심규선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송호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직무대행 김환학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권순철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기획조정관 박용수

인사혁신국장 김성훈

인사관리국장 천지윤

윤리복무국장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김채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최재용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김동극

경찰청

청장 윤희근

기획조정관 황창선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학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수사국장 김병찬

형사국장 김갑식

안보수사국장 이승협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경상북도경찰청

청장 김철문

수사부장 김형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서범규

경찰공제회

이사장직무대행 조순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하상구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배덕곤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이상규
대한소방공제회
상임이사 이종인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옥동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박현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김창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상임위원 이상훈
사무처장 송상교
조사1국장 황인수
대외협력담당관 박득배
운영지원담당관 김민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선거정책실장 신풍호
감사관 임정수
기획국장 김인수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선거1국장 윤재수